2004년 12월호(제102호)
ISSN 1226-2269 12

월 · 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2

현안분석

- 저소득 ·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 · 재정 지원 및 가격보조의 현황과 시사점
- 규모별 임금격차와 실업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美, 세금 민간인이 걷는다 외

정책흐름

보유세제 개편방안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Ⅰ편

KIP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한국조세연구원

월 · 간
12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이천사년 십이월호

C · O · N · T · E · N · T · S

권두칼럼	2	매력 있는 나라 만들기 / 윤순봉
현안분석	6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재정 지원 및 가격보조의 현황과 시사점 / 김종면
	23	규모별 임금격차와 실업 / 원종학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36	美, 세금 민간인이 걷는다 외
정책흐름	46	보유세제 개편방안
	61	2004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66	현금영수증제도 시범운영 관련 현황
재정통계	70	부가가치세 Ⅰ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80	연기금 함부로 써선 안 된다 외

• 2004년 12월 15일 발행 • 제102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라 7859 • 발행처/한국조세연구원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 전화 (02)2186-2130~3 • 월간

매력 있는 나라 만들기

윤순봉 /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 경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기 또 다시 부정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실상을 사실대로 보고 그 바탕 위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대책을 생각해야 할 때다. "경제를 다시 살리자", "재도약하자" 등 방법론이 결여된 당위론적 슬로건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필자는 그 대안의 하나로서 "매력 있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매력이란 강압이나 강권이 아닌, 상대방이 스스로 이끌려 오게 하는 유인력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스스로 원하여 내게 다가오는 것이므로 제로섬 관계가 아닌 상생의 방정식이 성립한다. 특히 21세기에는 '큰', '강한', '존경받는'이라는 위압적 용어보다 '매력'이라는 말이 훨씬 '매력'적이다. 매력 있는 한국을 만들자는 목표는 우리 경제주체들의 의욕과 엔돌핀을 북돋울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매력 있는 나라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의 확충,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 그리고 안보와 안전의 확보라는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자. 경기는 상황 변동에 따라 늘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호경기가 부작용을 남기는 경우도 있으며 불경기에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호·불황에 따라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경제의 펀드멘탈을 이루는 성장잠재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강인한 성장잠재력을 육성하고 있다면 그 경제는 다소의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우선 생산요소인 노동의 투입이 확보되어야 한다.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자가 줄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가 유치되어야 하므로 결국 궁극적 해결책은 매력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뿐이다.

법인세율이 90%라도 돈벌이만 된다면 세계 유수기업들이 몰려올 터이니 돈이 되는 기업환경을 일구는 것이 급선무다. 한국의 강점은 역시 '디지털과 소프트(digital & soft)'에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도 중요하지만 IT강국의 이미지를 살려 디지털 사업의 신천지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의 2.5차화, 문화를 결합한 소프트 관광 등 산업 전반의 소프트 경쟁기반 구축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투입을 늘려야 한다. 수 조원의 잉여자금을 쌓아 놓고도 투자하지 않는 원인을 기업에 돌리는 목소리들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역시 심리적인 데서 출발한다. 동물의 왕인 호랑이도 번식을 하기 위해

한국이 매력 있는 나라가 되려면 성장잠재력의 확충,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 그리고 안보와 안전의 확보라는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모든 주체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할 때 매력 있는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모델을 보존해야 하며, 이것은 글로벌화를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서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주변에 침입자가 있거나 수 십km에 달하는 자신의 영역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미가 불가능하다. 최근 숲이 파괴되고 인간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멸종 위기에 몰리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가에게 신규투자란 새로운 생명의 잉태와 진배 없다. 단 한 번의 의사결정 실수로도 수 십년을 이어온 사업이 일시에 몰락할 수 있다. 기업이 모든 정보와 지식을 모으고 직관과 지혜를 발휘해도 대규모 투자가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하물며 제반 환경이 불확실하고 앞날의 위험이 높을 때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축된 기업가 정신을 아무리 나무란들 소용이 없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human capital)의 총량을 늘리고 질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논의되는 교육개혁에 대한 담론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학교에서의 지나친 평등주의의 강조는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사회에 적응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끼리 아무리 평등하게 살고 싶더라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그런 소박한 희망은 유지될 수 없다. 치열하게 앞서가는 선진국의 교육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적절한 경쟁 원리의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사회에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이다.

또한 대학교육의 고도화가 시급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 세계 대학 100위에도 들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리 기업은 세계 1등 제품을 50여개나 가지고 있지만 세계 1등 학과가 한국에 있는가? 대학의 지식경쟁력이 취약하여 수많은 영재들이 지식 선진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학은 다른 일보다 학생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스스로의 지식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모든 주체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할 때 매력 있는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

둘째,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회역량을 기르자. 한국 전체가 동 : 서, 남 : 북, 보수 : 진보, 성장 : 분배, 빈 : 익, 국내 : 국외 등등으로 양분되고 있는 형상은 '죄수의 딜레마'를 연상시킨다. 이를 극복하는 첫 걸음은 먼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컨대 진보 진영에서는 "세상이 바뀌었는데 극우 보수파가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조만간 다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위 집합의 오류가 생긴다. 더욱이 세계화가 급진전을 보이면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이념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한국 사회에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관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사회 전체적으로 배양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를 선악의 잣대로 재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태도가 사라져야

한다.

셋째, 안보와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안전은 매력의 토대를 이룬다.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고 테러리스트들이 활보하는 사회는 가장 매력적이지 못한 사회일 것이다. 우선 자유시장경제 그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고한 한미공조 아래 북한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제환경에서 우리 기업들과 산업이 생존의 차원을 넘어 발전할 수 있는 경제안보 역시 중요하다. 환경보호나 에너지안보 역시 빠뜨려서는 안 될 사항이다. 사회적으로는 각 근로자들이 직업안정과 노후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도 요구된다. 자신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불안한 속에서는 매력은 사치일 뿐이다.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기의 원인을 우리 사회 주류(mainstream)의 부패와 과오로 몰아붙이는 역사적 판단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 시대를 이끌어 오면서 오늘의 경제성과를 이룩한 주류계층에 대해서 공과 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과 인정을 보내는 합리적 분위기가 아쉽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비판과 매도뿐인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려 하겠는가. 특히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기업을 일방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재단하고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은 물론 모든 경제주체의 자신감을 훼손시키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월스트리트 방식일 뿐 만국에 통용될 보편적 기준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모델을 보존해야 하며, 이것은 결코 국수주의의 재판이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화를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현안분석

저소득 ·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 · 재정 지원 및 가격보조의 현황과 시사점

김 종 면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규모별 임금격차와 실업

원 종 학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재정 지원 및 가격보조의 현황과 시사점

김 종 면 전문연구위원(jhrv@kipf.re.kr)

Ⅰ. 서 론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부문의 지출이 가장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복지부문 재정지출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 경제의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우리의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보완·확대하는 과정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고령화 문제, 의료비, 국민연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복지지출 수준이 계속 높아졌으며, 따라서 그동안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에 관심이 주로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가 이전에 비해 악화되었다는 인식하에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추세라고 판단된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비록 절대규모는 아직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비해 작으나 외환위기 이후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분야는 물론, 재정의 관점에서도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Ⅰ-1〉에는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복지부문 재정지출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첫 두 행에서 복지지출 총액의 추이를 보면,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하든지 건강보험을 포함한 복지분야의 총지출을 기준으로 하든지에 관계없이 1997년에 비해 2003년의 복지지출 총액이 약 2배 정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1]. 또한 절대금액이 아니라 GDP나 통합재정과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 ·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비록 절대규모는 아직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비해 작으나 외환위기 이후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분야는 물론, 재정의 관점에서도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교한 상대적인 크기를 보아도, 사회복지 총지출은 이 기간에 GDP 대비 비율이 약 38% 증가하였다. 또한 통합재정 대비 비율 역시 약 13% 정도 증가하여, 통합재정의 증가가 GDP 성장률보다 빠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표 Ⅰ-1〉 사회복지부문 재정지출의 추이

(단위: 억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복지지출 합계[1]	220,851 (4.87) [22.01]	290,083 (6.45) [25.13]	340,651 (7.06) [28.16]	317,865 (6.09) [24.59]	362,381 (6.65) [26.50]	395,643 (6.65) [26.24]	428,098 (6.70) [24.81]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 합계[2,3]	153,607 (3.39) [15.31]	213,323 (4.75) [18.48]	259,783 (5.38) 21.47]	227,226 (4.35) [17.58]	249,511 (4.58) [18.24]	275,021 (4.62) [18.24]	298,770 (4.67) [17.31]
공적연금	71,687 (1.58)	110,034 (2.45)	144,706 (3.00)	105,815 (2.03)	101,784 (1.87)	111,114 (1.87)	122,835 (1.92)
– 국민연금	26,523	40,857	46,959	21,175	18,868	24,146	28,498
– 공무원연금	28,076	50,698	73,154	62,260	57,488	60,023	64,672
– 사학연금	7,515	8,528	14,464	11,787	12,541	13,864	15,188
– 군인연금	9,573	9,951	10,129	10,593	12,887	13,081	14,477
건강보험	77,951 (1.72)	87,876 (1.95)	96,101 (1.99)	106,735 (2.04)	141,075 (2.59)	147,984 (2.49)	159,723 (2.50)
– 국고지원	10,703	11,116	15,233	16,096	28,205	27,362	30,395
고용보험	8,888 (0.20)	25,714 (0.57)	25,838 (0.54)	20,053 (0.38)	17,985 (0.33)	21,540 (0.36)	21,022 (0.33)

1) 이 표에서 첫 행의 복지지출 합계와 별도로 제2행에 통합재정 기준 합계를 제시한 것은, 통합재정의 범주가 현재 일반 · 특별회계 및 기금까지이므로 기금이 아닌 건강보험의 총지출 중 통합재정에는 국고지원만 포함되고 기타 보험료나 2002년 이후 지원되는 담배부담금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관례를 보나 IMF 등 국제기구의 지침을 보나 통합재정에 국가의 주요 사업인 건강보험 지출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총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1행에 건강보험 총지출을 포함한 복지지출 합계를 제시하였다.

〈표 Ⅰ-1〉의 계속

(단위: 억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산재보험	16,482	18,083	15,000	16,502	19,716	25,607	26,510
	(0.36)	(0.40)	(0.31)	(0.32)	(0.36)	(0.43)	(0.42)
기타 사회복지지출[4]	45,847	48,376	59,006	68,760	81,821	89,398	97,808
	(1.01)	(1.08)	(1.22)	(1.32)	(1.50)	(1.50)	(1.53)
– 기초생활보장	9,134	11,211	19,451	24,090	32,696	34,438	35,858
– 취약계층 지원	4,868	4,966	5,629	7,348	8,547	9,913	11,464
– 국가보훈	10,037	10,554	10,800	12,464	14,220	16,104	18,914
– 보건의료	2,271	2,270	2,319	2,360	2,867	3,307	4,045
– 기타	19,537	19,375	20,807	22,498	23,491	25,636	27,527

주 : 1) 건강보험 총지출 포함.
2) 괄호안은 GDP 대비 비중, [ ]안은 통합재정 대비 비율.
3)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액만 포함(담배부담금 제외).
4) 기타 사회복지지출은 중앙정부 지원분만 포함.
자료: 기획예산처

사회복지지출의 추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복지부문 총지출을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기타지출 등 크게 4개의 부문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4대 부문도 복지부문 총지출과 유사하게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 대략 2배 정도로 지출이 증가하였다. 여기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은 기타지출의 일부로, 저소득계층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재정지출을 말한다. 한편 취약계층은 사회복지정책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의가 아직 없으나, 본고에서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계층으로 정의하여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총재정지출을 추산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은 외환위기 이후 약 3배로 증가하여, 사회복지부문 중 가장 빨리 늘어났다는 사실을 〈표 Ⅰ-1〉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출은 1997년 사회복지 총지출의 6%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약 11% 수준으로 비중도 급증하였다.

사회복지 타부문에 비해 저소득·취약계층 정책의 특징은 지원의 형태가 재정지출은 물론 조세지출(조세감면)과 가격보조(할인 또는 면제혜택)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Ⅰ-2〉와 [그림 Ⅰ-1]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세지출 및 가격보조를 통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은 비록 재정지출에 비해 적지만 그래도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다. 또한 증가속도는 재정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의 현황 및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동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물론, 조세지출 및 가격보조의 현황도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저소득 · 취약계층 정책의 특징은 지원의 형태가 재정지출은 물론 조세지출과 가격보조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지출 및 가격보조를 통한 저소득 · 취약계층 지원은 비록 재정지출에 비해 적지만 그래도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다. 또한 증가속도는 재정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다.

〈표 Ⅰ-2〉 저소득 · 취약계층 지원현황(1998~2003)

(단위: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재정지출	16,177	25,080	31,438	41,243	44,351	47,322
기초생활보장 관련	11,211	19,451	24,090	32,696	34,438	35,858
취약계층 지원	4,966	5,629	7,348	8,547	9,913	11,464
조세지출	6,521	5,452	9,785	12,207	13,407	16,446
보육사업	155	162	132	145	141	141
영유아보육시설(지방세)[1]	–	–	178	95	138	142*
여성복지	404	409	713	816	1,001	1,069
장애인복지	75	800	654	1,027	1,566	1,729
장애인 소유자동차(지방세)[1]	–	–	989	1,105	1,180	1,217*
노인복지	945	930	1,382	1,594	1,706	3,533
노인복지시설(지방세)[1]	–	–	4	79	19	20*
기 타	4,942	3,150	5734	7,346	7,656	8,595
가격보조	892*	1,718	1,864*	3,475	3,672	4,725
합 계	23,590	32,250	43,128	56,925	61,430	68,493

주: 1) 1999년 이전의 지방세 감면은 대상별로 분류되어 집계되지 않았음.
* 1993 SNA 기준 국내총생산증가율로 추계.

[그림 Ⅰ-1] 저소득 · 취약계층 지원형태별 연도별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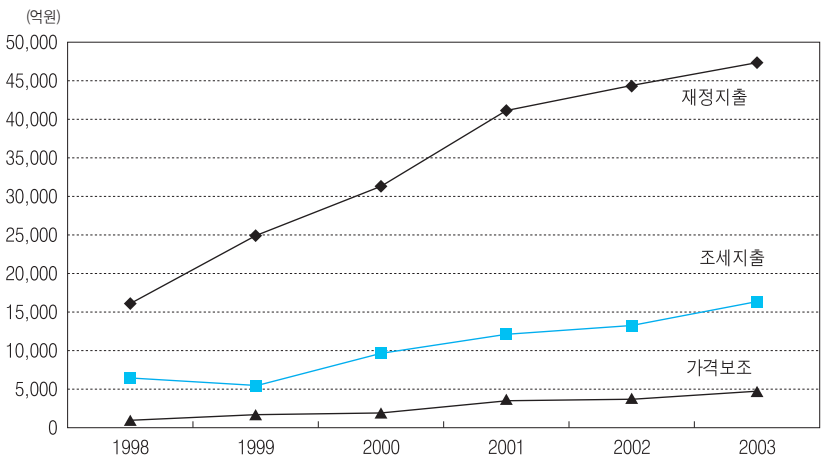

Ⅱ. 재정지원 현황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출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이외에도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유치원교육비 지원, 특수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장애인·고령자·여성가장실업자 취업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정보통신부의 장애인 정보화 교육사업도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외의 부처에서 지출되는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예산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본고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출을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2004년 예산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조 8,365억원이 지원되고, 취약계층 부문에는 1조 3,843억원이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규모는 1997년과 대비하여 기초생활보장은 4배 이상으로, 취약계층 지원도 거의 3배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자세히 보면 2004년 예산 기준으로 대상별 지출규모는 노인, 보육, 장애인, 아동 순이며, 1997년 당시의 지출규모 순위와 비교하면 노인부문과 보육부문만 순위가 바뀌었을 뿐이다. 지출규모의 증가에서는 노인, 보육, 장애인 부문이 약 3배로 증가하였음에 비해 아동부문에 대한 지원은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림 Ⅱ-1]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재정지출 구성비(2004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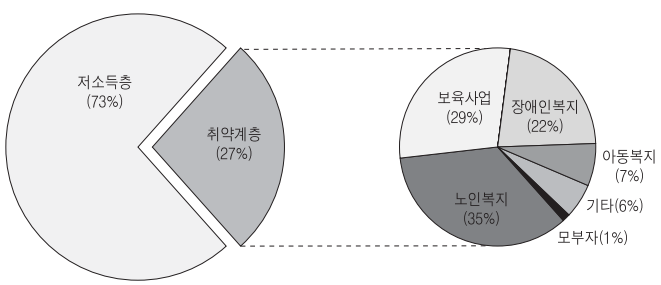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의 2004년 예산 기준으로 대상별 지출규모는 노인, 보육, 장애인, 아동 순이며, 1997년 당시의 지출규모 순위와 비교하면 노인부문과 보육부문만 순위가 바뀌었을 뿐이다. 지출규모의 증가에서는 노인, 보육, 장애인 부문이 약 3배로 증가하였음에 비해 아동부문에 대한 지원은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Ⅱ-1〉 저소득 · 취약계층 지원 재정지출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관련	9,134	11,211	19,451	24,090	32,696	34,438	35,858	38,365
취약계층 지원	4,868	4,966	5,629	7,348	8,547	9,913	11,464	13,843
보육사업	1,337	1,077	1,253	1,460	1,705	2,101	3,102	4,038
아동복지	446	446	473	603	737	770	842	984
노인복지	1,300	1,691	1,956	2,740	2,997	3,786	4,011	4,819
장애인복지	960	966	1,126	1,476	1,839	2,325	2,552	3,057
모 · 부자	180	169	168	237	256	180	178	175
기타	645	617	653	832	1,013	751	761	770
합 계	14,002	16,177	25,080	31,438	41,243	44,351	47,322	52,208

자료: 『예산개요』, 기획예산처.

Ⅲ. 조세지출 현황

정부의 저소득 · 취약계층 지원 중에서 재정지원에 이어 조세지출 형태의 지원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세지출이라 함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서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된다[2]. 즉,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세감면 혜택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보다 자세하게는 지원대상의 특정성, 예산지출 등을 통한 대체 가능성, 지원제도의 폐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재 254개의 조세지출 항목이 존재한다. 또한 지원수단은 직접세 부문에서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준비금' 등이 있으며, 간접세에서는 '부가세 영세율 및 면제, 특별소비세 면제, 저율과세' 등을 포함한다.

2) 재정경제부 세제실, 『2003년 조세지출보고서』, 2003.11.

본고에서는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행 조세지출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기존에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우선 국세부문의 조세지출 중 내국세는 재정경제부의 『조세지출보고서』에서 발췌하였으며, 관세는 한국조세연구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였고,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연감』에 의존하였다. 자료의 제약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조세지출 중 현재 규모가 별도로 파악되지 못한 소득세 특별공제(장애인), 상속세 인적공제(노인, 장애인), 증여세 비과세(장애인) 등이 누락되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표 Ⅲ-1〉에는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 추이가 조세형태와 지원대상별로 제시되어 있다. 우선 조세형태별 지원규모의 추이를 보면, 자료의 제약으로 1998/1999 2개 연도의 관세와 지방세 조세지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2000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내국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증가속도에서도 내국세는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3년 사이에 2배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조세지출이 급증하였으나 관세와 지방세는 이에 비하여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조세형태별 지원에 이어서 지원대상별 조세지출의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때 자료의 해석에 있어 유의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저소득층 대상 조세지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민세 비과세'가 있으나, 『지방세정연감』(행정자치부)에 그 내역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표 Ⅲ-1〉의 자료에서 누락되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조세지출의 절반 이상이 '기타'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기부금의 손금산입' 등을 반영하며, 기부의 대상 또는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지원대상별로 다시 분류할 수 없었다.

지원대상별 지원규모를 비교하면, 2003년 전망을 기준으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보육사업의 순서로 조세지출 규모가 크다. 특히 노인복지는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2003년에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1〉 저소득 · 취약계층 지원 조세지출의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전망)
합 계	6,521	5,451	9,785	12,207	13,407	16,446
조세형태별						
내국세	6,521	5,451	8,547	10,851	12,000	14,995
관세[1]	–	–	67	77	69	*71**
지방세[1]	–	–	1,171	1,279	1,337	*1,379**
지원대상별						
저소득층[1]	–	–	–	–	–	–
보육사업	155	162	310	240	279	283
여성복지	404	409	713	816	1,001	1,069
노인복지	945	930	1,386	1,673	1,725	3,553
장애인복지	75	800	1,643	2,132	2,746	2,946
기타	4,942	3,150	5,734	7,346	7,656	8,595

주: 1) 자료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서 파악되지 않음.
* 1993 SNA 기준 국내총생산증가율로 추계.

이러한 자료의 속성에 유의하면서 지원대상별 지원규모를 비교하면, 2003년 전망을 기준으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보육사업의 순서로 조세지출 규모가 크다. 특히 노인복지는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2003년에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큰 폭의 증가 때문에 [그림 Ⅲ-1]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복지 부문의 조세지출은 2002년까지도 장애인복지보다 규모가 상당히 작았으나 2003년에는 취약계층 중 가장 조세지출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애인복지 역시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2003년에 '장애인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전년 대비 71%,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나,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3]는 전년 대비 32%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3)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별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체를 장애인복지로 분류하였음.

애인복지를 위한 조세지출은 1998년까지도 취약계층 중 가장 규모가 작았으나, 최근 노인복지와 함께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속도가 빨랐음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림 Ⅲ-1] 조세지출의 연도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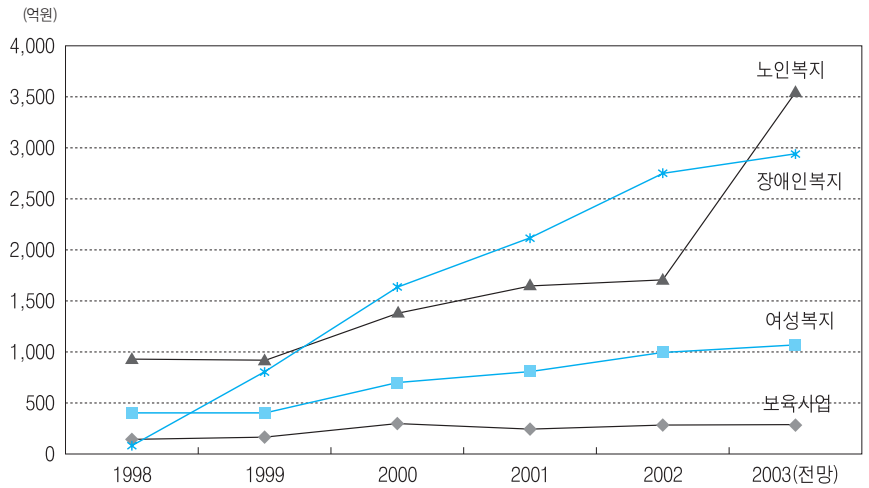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래 제시된 〈표 Ⅲ-2〉와 〈표 Ⅲ-3〉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 〈표 Ⅲ-2〉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이 조세형태와 지원대상별로 제시되어 있으며, 금액보다 대상별 조세지출의 종류나 수를 보면 단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3〉에 대상별 조세지출의 수가 다시 요약되어 있는데, 다른 계층에 대한 조세지출은 불과 몇 개씩밖에 되지 않음에 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은 13가지나 됨을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지출은 적어도 그 종류나 수에 있어서는 장애인 지원에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의 면제' 의 경우와 같이 어느 정도라도 경제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경제능력 손실이 큰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지출은 적어도 그 종류나 수에 있어서는 장애인 지원에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의 면제'의 경우와 같이 어느 정도라도 경제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경제능력 손실이 큰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표 Ⅲ-2〉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의 종류

구 분	주 요 내 용	'03 전망(억원)
소득세 인적공제	[보육] 6세 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공제	141
	[노인] 65세 이상이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공제	3,533
	[장애]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공제	587
	[여성] 부녀자 50만원 추가공제	1,069
소득세 특별공제[1]	[장애]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공제	–
	[장애]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
	[장애]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상속세 인적공제[1]	[노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3천만원 공제	–
	[장애]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은 75세에 달할 때까지 매년 500만원씩 공제	–
증여세 비과세[1]	[장애]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	–
	[장애]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 · 유가증권 · 부동산	–
생계형 저축 비과세	[장애/노인] 장애인 · 노인이 생계형 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524
부가세 영세율	[장애]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87.5
인지세 면제	[장애] 부산 아 · 태 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0
특소세 면제	[장애]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459
주민세 비과세[1]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를 비과세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면제	[장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1,217
	[노인] 노인복지시설에 취득세 · 등록세 등 면제	20
	[보육] 영유아보육시설에 취득세 · 등록세 등 면제	142
관세 면제	[장애]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71.1

주: 1) 자료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파악되지 않음.

〈표 Ⅲ-3〉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조세지출의 개수

구 분	개 수	규 모(2003년 전망)
장애인 지원 조세지출	13	2,946(억원)
노인 지원 조세지출	4	3,553
보육 지원 조세지출	2	283
여성 지원 조세지출	1	1,069
저소득층 지원 조세지출[1]	1	–

주: 1) 자료가 집계되지 않아 파악되지 않음.

Ⅳ. 가격보조정책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조세지출과 마찬가지로 본고에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모든 가격보조정책을 포괄하지는 못하지만, 지원규모가 비교적 큰 가격보조정책은 대부분 포함하여 취합하였다. 이 중 1995~2001년의 자료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용하였으며, 2002년과 2003년 자료는 소관기관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를 취합한 것이다. 또한 2002년 지하철, 고속도로통행료와 2002/2003년의 고궁·능 관람료는 이전 자료에 1993 SNA 기준 국내총생산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본고의 통계에서 누락된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의 주요 가격보조 지원은 공영버스요금 및 공영주차료 등이다.

〈표 Ⅳ-1〉에서 2003년 기준으로 가격보조의 지원부문별 규모를 비교하면, 통신과 교통부문에서 가장 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어서 전기, 방송, 고궁 등의 관람 순으로 가격보조가 실시되었다. 특히 규모가 가장 큰 통신부문은 이동통신요금할인의 증가와 초고속 인터넷 이용요금할인의 신규시행 등에 기인하여 최근 지원이 급증하였다(〈표 Ⅳ-2〉 및 〈표 Ⅳ-3〉 참조). 통신부문에 버금가는 규모를 보이고 있는 교통부문은 지하철 할인의 비중이 가장 크다. 교통부문 통계 해석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은, 2001년까지의 통계에 취약계층 이외에도 유공자에 대한 할인이 포함돼 있어 연도별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통신과 교통부문보다는 작지만 비교적 큰 규모의 지원이 전망되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바, 첫 해에 연간 590억원의 할인혜택이 전망되고 있다[4].

4) 전기요금 할인은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최종 실적이 전망치와 상당히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003년 기준으로 가격보조의 지원부문별 규모를 비교하면, 통신과 교통 부문에서 가장 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어서 전기, 방송, 고궁 등의 관람 순으로 가격보조가 실시되었다. 특히 규모가 가장 큰 통신부문은 이동통신요금할인의 증가와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할인의 신규시행 등에 기인하여 최근 지원이 급증하였다.

〈표 Ⅳ-1〉 저소득 · 취약계층 지원 가격보조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1995	1997	1999	2001	2002	2003
교 통	철도, 지하철, 항공료 고속도로 통행료	33,256	56,742	100,259	185,874	160,854	192,957
통 신	유 · 무선 전화요금 초고속인터넷	13,908	29,635	59,542	146,699	192,488	247,509
방 송	TV수신료	5,212	6,636	8,931	11,690	10,320	10,050
전 기	전기요금[1]	–	–	–	–	–	59,000
관 람	고궁 · 능	2,479	2,765	3,050	3,266	3,495	3,603

주: 1) 전기요금 할인은 2004년 3월부터 시행. 제시된 2003년 수치는 2004년 연간전망치임.
자료: 1990~2001년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에서 인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6).

가격보조의 지원부문별 분류 이외에도 재정지출이나 조세지출의 경우에서와 같이 지원대상 계층별 분류의 가능성도 검토하여 보았으나, 대체적으로 기초자료 단계에서부터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상세분류가 불가능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의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구매 이외에도 통신, 방송, 전기부문에서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위한 가격지원이 있었으나, 노인 등 취약계층과의 구분도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취약계층 내에서도 통신, 교통 등 지원부문별 지원액은 파악할 수 있었으나, 원시자료를 작성 · 취합하는 소관기관에서도 취약계층 내에서 다시 노인, 장애인 등 세부 계층별로 분류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과는 다른 계층인 국가유공자들과 구분되지 않고 통계가 작성된 사례도 많았다. 〈표 Ⅳ-4〉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중 상대적으로 자세한 지하철 가격보조 통계의 경우에도, 무임승차 운임 총액은 파악이 가능하였으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유공자 등 대상별 지원규모는 총액을 당해 지역 거주 취약계층 인구와 유공자 인구의 비율로 배분하여 작성한 추계치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할인 · 면제 승차권을 발부하여 무임승차 총액까지는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하철의 경우와는 달리, 고궁 · 능의 무료입장의 경우에는 무료입장 실적이 별도로 작성 ·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총액조차 추정치만

존재한다. 따라서 재정지원이나 조세지출에 비하여 가격보조의 규모나 대상 인구에 대한 정보나 통계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Ⅳ-2〉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가격보조의 종류

구 분	주 요 내 용	2003 (억원)
【통신요금 감면】		
시내외전화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은 시내전화(50% 감면), 시외전화(월3만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 114안내요금 면제	473
	저소득층[1]은 시내전화(가입관련 비용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 면제), 시외전화(75도수 면제), 114안내요금 면제	
이동전화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은 이동전화(가입비 면제 및 기본료 30% 감면), 무선호출 기본사용료 30% 감면	1,455
	저소득층은 무선호출 기본사용료 30% 감면	
초고속인터넷	장애인 등은 PC통신요금 및 ADSL접속요금의 30~50% 할인	547
【교통요금 감면】		
철도요금	장애인승객 50% 할인	116
	노인승객 30~50% 할인	167
지하철요금	장애인승객 무료	202
	노인승객 무료	1,047
국내항공료	장애인승객 50% 할인	148
	노인승객 10% 할인	17
고속도로통행료	등록장애인차량은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233
연안여객선[2]	장애인은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50% 할인	–
공영버스요금[2]	장애인은 공영버스요금 면제	–
공영주차장[2]	장애인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공항터미널[2]	장애인은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	–
【TV수신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면제	69
	시각·청각장애인 가정 면제	31
【전기요금】	저소득층(월100kWh 이하 사용자) 15~35% 할인	120
	장애인 20% 할인	470
【주민등록】[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민등록관련 수수료 면제	–
【공공시설】	장애인 50~100% 할인	36
	노인 50~100% 할인	

주: 1)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제4호.
2) 자료가 집계되지 않아 파악되지 않음.

〈표 Ⅳ-3〉 저소득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가격보조의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1995	1997	1999	2001	2002	2003
합 계			54,856	95,778	171,782	347,531	367,157	472,494
정부양곡할인구매[1]			–	–	–	–	–	12,363
교통	철도[2]	장애인	8,500	17,800	32,700	61,157	10,380	11,600
		노인					15,700	16,700
	지하철[3]		22,537	33,212	51,067	94,997	101,647	124,906
	국내선항공료		1,700	4,160	8,753	12,073	14,245	16,481
	고속도로통행료[4]		519	1,570	7,739	17,647	18,882	23,270
통신	유선전화요금		13,908	24,415	35,301	146,699	44,604	47,291
	이동통신[1]		–	5,220	24,241		108,995	145,510
	초고속인터넷[1]		–	–	–	–	38,889	54,708
방송	TV수신료		5,212	6,636	8,931	11,690	10,320	10,050
전기	전기요금[1], [5]		–	–	3,050	–	–	59,000
관람	고궁 · 능[6]		2,479	2,765	–	3,266	3,495	3,603

주: 1) 제도가 신설된 연도부터 자료 표기.
2) 철도/지하철요금 할인 중 2002년 이전 수치에는 유공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지하철요금 할인 중 2002년 수치는 1993 SNA 기준 국내총생산증가율로 추계.
4) 고속도로통행료의 2002년 수치는 1993 SNA 기준 국내총생산증가율로 추계.
5) 전기요금 할인은 2004년 3월부터 시행. 해당 수치는 연간전망치임.
6) 고궁 · 능의 2002년 및 2003년 수치는 1993 SNA 기준 국내총생산증가율로 추계.

자료: 1990~2001년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에서 인용, 보건사회경제연구원(2003. 6).

〈표 Ⅳ-4〉 2003년 지하철 무임수송 현황

(단위: 명, 원)

구 분	인 원	환산운임
서울지하철공사(지하철1~4호선)	97,435,454	66,560,445,500
노인	82,999,420	56,698,851,852
장애인	10,656,610	7,279,780,408
유공자	3,779,424	2,581,813,240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5~8호선)	53,456,861	36,543,472,400
노인	41,867,242	28,620,730,321
장애인	8,604,824	5,882,315,992
유공자	2,984,795	2,040,426,087
대구지하철공사(2002년)	7,464,605	4,656,000,000
노인	6,339,117	3,953,984,002
장애인	941,526	587,270,868
유공자	183,962	114,745,130
인천지하철공사	4,519,173	3,087,832,800
노인	2,919,386	1,994,739,990
장애인	1,464,212	1,000,457,830
유공자	135,575	92,634,980
부산교통공단[3]	36,293,668	20,070,398,404
노인	24,247,686	13,408,970,114
장애인	9,908,135	5,479,198,767
유공자	2,137,847	1,182,229,523
합 계	199,169,761	130,918,149,104

주: 1)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로부터 각각 24,808백만원, 13,892백만원을 지원받았음.
2) 대구의 경우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하여 2003년 운행이 정상적이지 못하였으므로 2002년 자료를 사용함.
3) 부산교통공단의 경우 부산에 거주하는 노인(223,292명, 통계청, 2003년말 추계), 장애인(91,242명, 2002년말, 보건복지부), 유공자(19,687명, 2003년말, 보훈처)비율로 안분하였음.

자료: 해당기관 담당자와 개별 연락하여 수집.

연령보다는 취약계층 개개 구성원의 구체적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변별력이 있는 다른 기준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저소득 · 취약계층 지원정책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지원대상 계층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취약하므로 이의 시정을 위한 기초통계 확보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Ⅴ. 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논의를 다시 요약하면,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부문 재정지출은 전반적으로 약 2배 증가하였음에 비해, 그 중 저소득 · 취약계층 지원은 약 3배 정도로 가장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저소득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이 복지재정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약 6%에서 2003년 약 11%로 급증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그 이후 분배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저소득 ·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의 증가와 아울러, 동 계층에 대한 지원은 조세지출과 가격보조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 파악한 현황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지원규모는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나, 재정지출과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볼 수 있다. 지원형태별로 취약계층 지원규모를 비교하면, 노인복지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며, 보육사업에서는 재정지원에 비해 조세지출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인다[5].

우리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재정지원을 비롯하여 조세지출 및 가격보조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중 노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증가속도 역시 가장 빠른 편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노인계층이 향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급속히 증가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단순히 연령기준에 근거한 정책을 고수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자명하다. 따라서 연령보다는 취약계층 개개 구성원의 구체적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변별력이 있는 다른 기준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저소득 · 취약계층 지원정책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지원대상 계층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취약하므로 이의 시정을 위한 기초통계 확보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저소득 · 취약계층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조세지출은 장애인 지

5) 보육사업에서는 재정지원에 비해 조세지출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이나, 본고의 결과에서 보육 조세지출에 포함 가능한 교육비 소득공제가 누락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혜택이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 따라서 장애인 이외의 타 계층 및 경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경제활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경제와 재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조세지출이 적합한 정책수단일 수도 있으며, 경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경제행위에 대한 조세감면 형태보다는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에는 본고에서 제시한 것보다 상세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상세하게 현행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이 파악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 기초통계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다. 이에 더하여 재정지원, 조세지출, 가격보조 등 여러 가지 지원수단 중에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원대상별로 어느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또한 지원의 효율성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각 제도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교·분석이 있어야 지원정책의 종합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는 차후 과제로 남기면서, 본고에서는 개략적인 수준이나마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총체적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차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KIPF

규모별 임금격차와 실업

원 종 학 전문연구위원(jweon@kipf.re.kr)

Ⅰ. 서 론

채용포털 인크루트가 2004년 하반기 공채를 실시한 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채용 경쟁률이 101 대 1로 집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동사(同社)의 보고에 의하면 대기업 하반기 채용 경쟁률은 2002년에는 70 대 1, 2003년에는 75 대 1이었다. 비록 조사대상이 공채를 실시한 57개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대기업 평균 채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100 대 1을 넘어섬으로써 사회에 큰 파장을 주고 있다.

인크루트의 채용 경쟁률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실업률은 매년 그 심각도를 더해가고 있다. 실업은 경제주체뿐 아니라 거시적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능습득 시기인 청년 시절에 오랫동안 실업상태에 있게 되면 그만큼 기능습득을 위한 시기를 놓치게 되므로 경제 전체로 보아 생산성에 더욱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아울러 미숙련상태로 실업상태를 유지할 경우 장기실업에 빠질 수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은 적지 않다 하겠다.

실업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실업률은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낮아진다. 실제로 1999년 이후, 1997년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실업률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위의 인크루트가 실시한 대기업 채용 경쟁률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취업상황이 과거에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도를 더해가고 있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 즉 실업률과 노동력 부족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왜 청년층 노동력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고 실업상태를 유지하는가? 본고는 199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청년층을 포함한 취업 대기자들을 대기업에만 쏠리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절에서는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본 다음, 제3절에서는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제4절은 요약과 시사점이다.

Ⅱ.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와 전직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실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그림 Ⅱ-1]과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5~19세 연령층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으며, 60세 이상 연령층의 실업이 가장 낮아 실업률은 연령과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실업률의 특징으로서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실업률을 시기별로 볼 때, 실업률 수준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으나 시기별로는 남녀 모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15~29세 사이의 청년층의 경우 실업률 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변동폭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률의 변화가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실업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청년층(15~2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15~19세 연령층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으며, 60세 이상 연령층의 실업이 가장 낮아 실업률은 연령과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실업률을 시기별로 볼 때, 실업률 수준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으나 시기별로는 남녀 모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15~29세 사이의 청년층의 경우 실업률 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변동폭도 크다.

[그림 Ⅱ-1] 연령별 실업률의 추이(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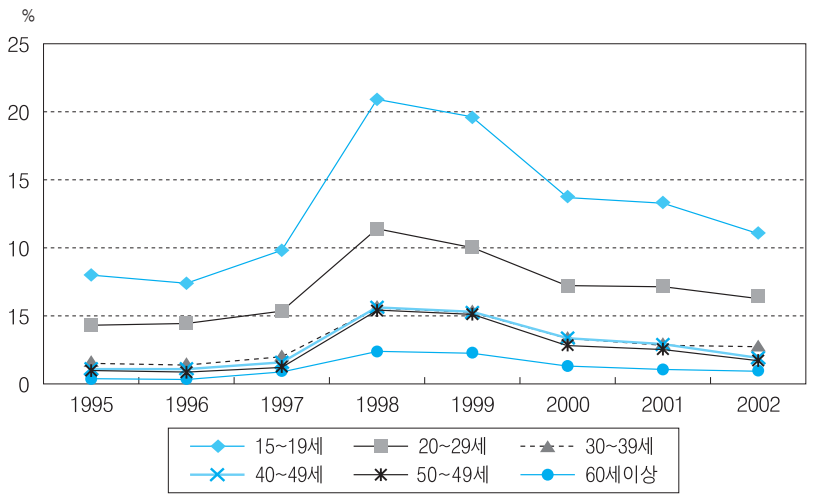

한편, 노동시장에서의 인력부족률을 살펴보면(〈표 Ⅱ-1〉), 1997년 이전에는 거의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인력부족률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인력부족은 규모가 작을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규모(10~29인) 기업에서는 1997년에도 인력부족률이 3.77로 현재 인원보다 4배 가량의 인원이 부족한 극심한 인력부족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소규모 사업체의 인력부족 상황은 1990년대 후반에도 지속되어, 1997년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 사업체(10~39인)에서는 여전히 인력부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1997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와 구직자와의 매칭(matching)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Ⅱ-1〉 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률

(단위: %)

	전규모	1규모 10~29인	2규모 30~39인	3규모 100~299인	4규모 300~499인	5규모 500인 이상
1991	5.48	7.78	7.17	6.49	4.87	2.25
1992	4.26	4.81	4.76	6.30	3.48	2.14
1993	3.62	4.37	5.03	4.21	2.21	1.66
1994	3.57	5.75	4.40	3.76	1.89	1.33
1995	3.71	5.82	3.97	4.23	2.17	1.38
1996	2.98	4.25	3.45	3.15	1.72	1.49
1997	2.44	3.67	2.91	2.66	1.41	0.83
1998	0.65	1.16	0.75	0.67	0.32	0.06
1999	0.97	1.80	1.02	0.90	0.53	0.14
2000	1.16	1.79	1.29	1.18	0.57	0.32
2001	1.15	1.75	1.31	1.14	0.57	0.21
2002	2.13	3.08	2.43	2.04	1.03	0.73

주: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 / 현재인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2003.

이상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실업률과 인력부족률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연구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이 설명은 대부분의 인력부족 기업이 중소규모라는 것을 고려하면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기능의 불일치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주로 중소기업에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표 Ⅱ-2〉에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종업원 규모별 임금추이를 제시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실업률과 인력부족률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이 설명은 대부분의 인력부족 기업이 중소규모라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표 Ⅱ-2〉 종업원 규모별 임금추이

(단위: 천원)

	전 체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2002	1,532.8 (83.2)	1,294.6 (70.3)	1,414.2 (76.8)	1,509.2 (81.9)	1,572.1 (85.3)	1,717.9 (93.2)	1,842.3 (100.0)
2001	1,393.1 (83.3)	1,209.4 (72.3)	1,281.1 (76.6)	1,368.4 (81.8)	1,455.5 (87.0)	1,547.8 (92.5)	1,673.0 (100.0)
2000	1,313.9 (85.0)	1,145.9 (74.1)	1,222.0 (79.0)	1,290.5 (83.5)	1,360.5 (88.0)	1,501.5 (97.1)	1,546.2 (100.0)
1999	1,210.8 (85.8)	1,051.9 (74.5)	1,135.3 (80.4)	1,173.6 (83.1)	1,246.0 (88.2)	1,303.7 (92.3)	1,411.9 (100.0)
1998	1,148.1 (88.8)	–	1,080.5 (83.5)	1,093.1 (84.5)	1,124.4 (86.9)	1,195.5 (92.4)	1,293.2 (100.0)
1997	1,131.6 (90.1)	–	1,083.3 (86.2)	1,077.9 (85.8)	1,111.4 (88.4)	1,180.9 (94.0)	1,256.6 (100.0)
1996	1,049.9 (91.1)	–	994.2 (86.2)	1,010.4 (87.6)	1,022.9 (88.7)	1,113.2 (96.5)	1,153.1 (100.0)
1995	927.9 (91.2)	–	875.6 (86.1)	874.2 (86.0)	930.3 (91.5)	994.7 (97.8)	1,017.0 (100.0)
1994	827.6 (90.9)	–	783.3 (86.0)	779.9 (85.7)	840.2 (82.3)	857.0 (94.1)	910.3 (100.0)
1993	757.0 (91.9)	–	709.7 (86.2)	716.9 (87.0)	765.7 (93.0)	788.3 (95.7)	823.6 (100.0)

주: ( ) 안은 비율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연도

〈표 Ⅱ-2〉에서 알 수 있듯이, 1993년 500인 이상 대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10~29인 기업은 86.2%, 30~99인은 87.0%, 100~299인은 93.0%, 300~499인은 95.7%로 500인 이상의 대기업과 100인 이상 규모와는 10% 이내, 가장 소규모인 10~29인 규모와는 13.8%의 임금격차만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어 2002년을 보면 10~29인의 소규모 기업과 500인 이상의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는 23.2%로 10년간 약 10%p 확대되었으며, 100~300인 규모와의 임금격차도 같은 기간 7%에서 14.3%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각 개인의 속성을 제어한 임금함수의 추정을 통한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다.

기업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 다른 데 대한 설명으로는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즉,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아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능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생산성의 차이를 불러와 기업규모간 지불능력의 차이를 가져오고, 지불능력의 차이는 임금격차의 확대로 나타난다.

이렇듯 기업규모간에 임금격차가 존재하며 그 격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업규모별 전직이 용이한가 아닌가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개별근로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같은 능력을 가진 개인이라 하더라도 기업간 전직이 용이하지 않다면, 최초에 취업한 기업규모에 따라 생애소득(life-time income)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처음에 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설령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쉽게 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속해서 소기업에 남아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처음부터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과는 계속해서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기업규모간 이·전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이터는 그리 많지 않다. 약간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나 기업간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1992년의 『고용구조조사보고서』에 나타난 기업규모간 이동을 정리한 것이 〈표 Ⅱ-3〉이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어 2002년을 보면 10~29인의 소규모 기업과 500인 이상의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는 23.2%로 10년간 약 10%p 확대되었으며, 100~300인 규모와의 임금격차도 같은 기간 7%에서 14.3%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

〈표 Ⅱ-3〉 규모별 전직자 및 전직률

(단위: 명)

전 체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실업자
총수	8,914	1,513	2,837	1,142	1,158	1,805	483
경제활동인구	8,740	1,459	2,741	1,108	1,126	1,750	391
취업자	8,682	1,428	2,690	1,089	1,108	1,729	248
1~4인	8,420 (94.5)	99 (6.5)	91 (3.2)	25 (2.2)	30 (2.6)	44 (2.4)	84 (17.4)
5~9인	121 (1.4)	1,221 (80.7)	76 (2.7)	13 (1.1)	13 (1.1)	15 (0.8)	39 (8.1)
10~49인	82 (0.9)	81 (5.4)	2,431 (85.7)	47 (4.1)	30 (2.6)	38 (2.1)	62 (12.8)
50~99인	20 (0.2)	8 (0.5)	42 (1.5)	970 (84.9)	23 (2.0)	17 (0.9)	21 (4.3)
100~299인	21 (0.2)	10 (0.7)	27 (1.0)	23 (2.0)	992 (85.7)	24 (1.3)	19 (3.9)
300인 이상	17 (0.2)	8 (0.5)	23 (0.8)	11 (1.0)	21 (1.8)	1,590 (88.1)	22 (4.6)
실업자	58 (0.7)	32 (2.1)	51 (1.8)	19 (1.7)	18 (1.6)	22 (1.2)	143 (29.6)
비경제활동인구	174 (2.0)	54 (3.6)	96 (3.4)	34 (3.0)	32 (2.8)	55 (3.0)	93 (19.3)

주: ( )안은 비율

자료: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1992.

〈표 Ⅱ-3〉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전직은 대부분이 동일 규모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업규모가 큰 쪽으로의 이동, 특히 300인 이상의 대기업으로의 이동은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1]. 이와 같이 기업규모간에 전직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당연히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할 것이며, 설령 소기업으로부터 취업에 관한 제의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Ⅲ. 실증분석

3절에서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실업을 증가시키고 있는가의 문제를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ies) 데이터를 사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비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2]. KLIPS의 1~5차년도 조사결과를보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KLIPS 1~5차년도 조사결과 비교

(단위: 가구)

	1차 조사('98)	2차 조사('99)	3차 조사('00)	4차 조사('01)	5차 조사('02)
조사성공가구수[1]	5,000	4,509	4,267	4,248	4,298
유효표본가구수[2]	5,000	4,379	4,045	3,865	3,798
표본유지율[3]	–	87.6%	80.9%	77.3%	76%
분가가구수	–	130	222	383	500
가구원수[4]	13,317	12,042	11,206	11,051	10,965
실사기간	6월~10월	7월~12월	5월~10월	5월~10월	4월~9월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유효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유효표본가구의 비임.
4)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출저: 한국노동연구원, 『제5차 (200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2003, p.18.

1) 왜 규모간 이동이 제한적인가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내부노동시장이 확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몇 가지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생각되므로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2) KLIP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기업규모간에 전직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당연히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할 것이며, 설령 소기업으로부터 취업에 관한 제의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실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U_j = a_0 + a_1 D_{ij} + a_2 SEX_i + a_3 EUD2 + a_4 EDU3 + a_5 FINC + a_6 FHERD + a_7 G$

여기서 U는 실업상태(1=실업, 0=비실업), D는 규모별 임금격차, SEX는 성(1=남성, 0=여성), EDU는 교육수준($EDU1$=고졸 이하, $EDU2$=고졸, $EDU3$=전문대졸 이상), FINC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계수입, $FHERD$는 가구주 여부를 나타낸다.

〈표 Ⅲ-2〉 사용변수의 기초 통계량

연 도	표본수(인) (여성)	실업률(%)	월평균임금(만원)		경제성장률(%)
			(300인 미만)	(300인 이상)	
1998	13,738 (6,951)	13.5(7.2)	107	137	−6.7
1999	12,036 (6,249)	6.8(6.6)	90	134	10.9
2000	11,205 (5,816)	4.2(4.3)	109	137	9.3
2001	11,047 (5,737)	3.7(3.9)	126	152	3.1
2002	10,959 (5,670)	3.3(3.2)	135	175	6.3

실업자의 정의는 현재 미취업이면서 ① 지난 1주간 일자리를 찾는 적이 있으며, ②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겠다고 답한 사람이다. 노동패널 데이터로 파악한 실업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13.5%였던 실업률이 2002년에는 3.2%까지 매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를 통계청의 실업률과 비교하면 1999년 이후는 통계청의 실업률과 큰 차이가 없으나, 1998년의 실업률이 통계청의 실업률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에 한해 유독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노동패널의 최초 조사시점이 1998년임을 고려할 때 일을 찾고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으리라 추측된다.

성(SEX)은 실업률이 남녀별로 다른 것을 고려하기 위해 설명변수에 추가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고졸과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비교한다. 또한 실업상태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느냐를 고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계수입과 본인이 가구주인지의 여부, 그리고 실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는 지역별 경제성장률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지역별 경제성장률은 국민계정의 지역별 총생산량의 증감으로 계산하였다. 임금격차는 또한 노동시장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임금격차를 사용하였다.

지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서울이나 인천지역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있는 기업의 임금격차보다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광역지역의 임금격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을 현재의 행정구역대로 나누기보다는 실제로 취업을 할 때 광역지역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을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단위로 하는 8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성장률과 임금격차를 구하였다. 표본수가 적은 제주도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추정은 패널 데이터를 사용한 패널분석이며, 종속변수가 실업상태인가 아닌가의 2항 선택이므로 probit 추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35세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표 Ⅲ-3>과 같다[3].

3)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도 추정한 결과도 본고의 결과와 거의 같았다는 것을 밝혀둔다.

경제성장률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타의 변수에 비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커질 경우 설령 중소기업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생애임금이 더욱 큰 대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고 실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3〉 추정결과

	전 체		35세 이하		36세 이상	
	계수	P>z	계수	P>z	계수	P>z
G	−1.5249	0.000	−1.2338	0.000	−1.8274	0.000
D	0.3665	0.000	0.2530	0.006	0.4757	0.000
SEX	0.2114	0.000	0.1481	0.000	0.2792	0.000
EDU2	0.0520	0.106	−0.0965	0.175	0.0309	0.473
EDU3	0.0571	0.112	−0.0327	0.650	−0.1801	0.003
FINC	0.0001	0.061	−0.0002	0.351	0.0003	0.001
FHERD	−0.1982	0.000	−0.2428	0.000	0.2049	0.006
상수	−2.3115	0.000	−2.0137	0.000	−2.8134	0.000
obs.	58,964		25,679		33,285	

추정결과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가 −1.5249, 35세 이하 연령층에서 −1.2338, 36세 이상에서 −1.8274로 모든 경우에서 여타의 변수에 비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모별 임금격차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가 0.3665, 35세 이하가 0.253, 36세 이상이 0.4757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플러스의 결과가 얻어졌다. 이 결과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경우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커질 경우 설령 중소기업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생애임금이 더욱 큰 대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고 실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4].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불황이 되면 비경제활동인구화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학력의 경우 대부분 유의하

4)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35세 이하의 연령층보다는 36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듯 연령에 대한 효과가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난 요인의 하나로 자영업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기업별 임금규모가 취업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과 36세 이후에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36세 이후의 결과에는 자영업자의 혼재로 인한 효과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 않게 나타나, 1997년 이후 실업률이 학력에 관계없이, 즉 전 학력에 걸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났다. 가계의 비근로수입은 36세 이상의 중장년층에 한해 플러스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비근로수입이 높을수록 집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실업을 하면서 더 좋은 취업자리를 찾는다는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Ⅴ. 요약 및 시사점

최근 청년층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등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4년 채용 전문업체인 인크루트가 구직자 1,643명을 대상으로 '구직성향' 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61.4%인 1,008명이 "최종합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최종합격자 중 84.7%인 854명이 "입사를 포기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입사를 포기한 구직자들 중에는 77.2%가 중소기업 합격자였다[5].

본고에서는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불균형을 199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실업을 심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① 실업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률이다. ② 규모별 임금격차는 실업을 증대시키고 있다. ③ 남성이 여성보다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④ 학력에 따른 실업률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현재의 실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먼저, 실업대책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도 경기활성화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경우 청년층 내지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외면하고 실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추정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현재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고시 열풍, 해외 어학연수, 취업 재수 등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 실업을 선택하고 있는 노동시장 불균형의 배후에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기업의 임금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에 의존한다. 따라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격차를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으며 또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면 경제성장으로 인한 실업률 대책에 더하

5) 2004년 11월 29일 인터넷 조선일보.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면 경제성장으로 인한 실업률 대책에 더하여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로 인한 실업률도 아울러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여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로 인한 실업률도 아울러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인 KLIPS의 실업률이 1998년의 경우 유난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기업규모별 임금의 추이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의 추이가 전체 데이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데이터가 장기에 걸쳐 구축된다면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금재호 · 조준모,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이병희,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매월노동동향』 제28호, 한국노동연구원, 2003.

최영섭, 『청년실업문제의 구조적 원인분석과 중장기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2003.

황수경 외 5인, 『제5차(200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4.

Blanchflower, D. and R. B. Freeman, *Youth Employment and Joblessness in Advanced Countri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Johnson G. E. and P. R. G. Layard,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Explanation and Policy," in O. Ashenfelter and R. Lay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2, chapter 16, Elsevier Science Publishers, 1986.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Pissarides, C. A., *Equilibrium Unemployment Theory*, The MIT Press, 2000.

Summers, L. H., *Understanding Unemployment*, The MIT Press, 1990.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 정책

美, 세금 민간인이 걷는다

– 국세청 전문추심업체 동원 –

□ 미국 국세청(IRS)이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마침내 민간추심업자들을 동원키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지가 24일(현지시간) 보도

□ 교육부나 주정부 세무당국이 채권추심을 민간업체에 의뢰한 사례는 있으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문추심업체를 동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과 계약을 맺은 전문추심업체는 회수된 체납세금의 25%를 보수로 받게 되며 회수율이 일정 목표치를 넘어설 경우 성과급도 지급받음

○ 미국 국세청은 일단 내년부터 10여개 대형 추심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세금체납자들을 쫓아다닐 예정

□ 미국에는 지난 2003년 한 해만도 체납세금이 1,2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국세청은 일단 첫 해엔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징수가 쉬운 것으로 판단되는 130억달러의 연체금 회수에 주력할 방침

○ 가장 최근자료인 2001년 9월 추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10만달러 이상의 세금이 밀린 연체자는 7만 6,686명에 이름

○ 골치를 앓고 있던 국세청은 지난 90년대 말 지금과 유사하지만 규모는 좀더 작은 민간대행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가 과다한 비용문제로 폐기한 적이 있음

○ 이어 2002년 이 프로젝트를 재추진하려 했으나 의회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가 지난 주에 마침내 의회를 통과, 내년에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 것임

□ 미국 국세청 자체 추산에 따르면 체납분에 대한 위탁징세 프로젝트가 전면 가동될 경우 민간업체가 다루게 될 건수는 연간 260만 건에 이르고 민간추심업체에 지불하게 될 보수도 연간 13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는 민간 추심업계의 현재 시장규모 80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임

□ 그러나 비판론도 적지 않음

○ 민간 추심업자들이 권한을 남용, 마치 법 집행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납세자들과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

○ 실제 2003년 기준 제3자 채권추심 관련 분쟁은 연방무역위원회에 제기된 것만도 3만 4,543건에 이르고 있어 민간업체들이 과도한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거두

어들이는 데 혈안이 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파이낸셜뉴스 11/25〉

中, 다국적 기업 세금포탈 본격 단속 방침

□ 중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포탈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 경제판이 21일 보도

○ 신문은 중국 국무원 고위관계자를 인용, 현재 중국에서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세금포탈 규모가 매년 300억위안에 달한다고 보도

○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 가운데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조치는 최근 광둥(廣東)성에서 해외 자금이 투자된 9,500개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가격' 등 각종 불법 세금포탈 행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

○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기업이 상호 거래할 때 설정되는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조작함으로써 기업 전체로서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행위를 말함

〈연합인포맥스 11/22〉

부시, 소득세 일률과세 및 판매세 검토

– '高소득 高세율' 원칙 파기되나 –

□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으면서 백악관 내부에선 소득세의 일률과세와 판매세 신설 등 획기적인 세제개혁 방안이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8일(현지 시간) 보도

□ 부시 대통령이 소득세 일률과세를 도입할 경우 이는 우드로 윌슨(1913~1921년) 전 대통령 이후 80여년 만에 처음으로 '높은 소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백악관의 원칙이 변하는 것임

○ 타임즈는 이날 공화당 고문들의 발언을 인용, 판매세 도입이나 소득세의 일률과세 등 야심에 찬 급진적인 계획을 부시 대통령이 지지해야 하느냐를 놓고 백악관 내부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힘

○ 부시 대통령의 측근들은 선거 전에도 누진과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존의 세금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제도를 완전히 털고 백지에서 새 출발해야 하느냐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는 것

○ 이 신문은 그러면서 부시 행정부 내부에는 후자, 즉 백지에서 새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함

□ 소득세 일률과세와 판매세는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재임중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역사적 임무이기는 하지만 이념적 논란과 정치적 모험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복잡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백악관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리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곧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타임즈는 전망

○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중립적 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연구토록 할 계획이나 주택대부이자와 자선기금에 대한 세금공제는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부시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여러 차례 소득세 단순화를 언급했지만 현행 소득세의 맹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율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인지 개념이 분명치 않았음

〈연합뉴스 11/09〉

캐나다, 대규모 세금인하 고려중

□ 캐나다 정부가 자국내 사업환경 개선방안으로 대규모 세금인하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캐나다 재무부 장관은 경기부양을 위한 세금인하의 중요성에 대해 최근 공식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현지 언론들은 오는 11월 16일로 예정된 국회 재무위원회 경제보고회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대규모 세금인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

□ 그동안 긴축정책을 운용하던 캐나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재정흑자의 대부분을 부채탕감과 사회보장 프로그램 지출비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입장을 바꿔 대규모 지출사업과 상당량의 잉여수익을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겨냥한 세금인하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캐나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재정흑자를 달성한 이래 2001년까지는 '50/50공식'을 이용해 흑자의 50%는 각종 정부사업 지출비 인상에, 나머지 50%는 소득세 인하 및 부채상환에 사용해 왔는데 2001년부터는 부채상환 및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 강화에 전력해온 바 있음

○ 한편, 캐나다는 향후 6년간 총 C$200억~250억(약 U$160억~200억) 규모의 재정흑자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003~04 회계연도 재정흑자는 종전 전망치인 C$19억(약 U$15억 2천만)을 4배 이상 상회하는 C$91억(약 U$73억)에 달할 것으로 발표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이번 회계연도 흑자 폭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기업들의 수익률 향상에 따라 전년보다 23.4%가 증가한 총 C$52억(약 U$42억)의 법인세가 납부되었기 때문

□ 따라서, 캐나다 정부의 오는 11월 세금인하 정책 발표와 더불어 캐나다인들의 소비증대 및 캐나다 기업들의 자본재 투자 등이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대 캐나다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KOTRA 경제무역정보 11/9〉

일본, 개인소비 · 기업실적 호조로 국세징수 5.1% 늘어

□ 일본의 일반회계 세수가 전년도 실적을 웃돌고 있음

○ 일본 재무성이 1일 발표한 금년도 상반기(4~9월)의 누계세수는 전년도 동기에 비해 5.1% 늘어났음

○ 소득세가 견조한 데다가 개인소비와 기업실적의 호조에 힘입어 소비세와 법인세수가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임

□ 연도예산의 3분의 1 정도의 수납을 마친 9월말까지의 누계세수는 13조 3,555억엔임

○ 국세 수입은 디플레이션이나 경제대책으로서의 감세 등으로 인해 작년도까지 3년 연속 전년도 실적을 밑돌았음

○ 재무성은 현시점에서 금년도 세수를 전년도 대비 3.5% 줄어든 41조 7,400억엔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9월까지는 4년만의 증세를 유지하고 있음

□ 명세를 보면 소비세가 전년도 실적을 약 10%, 법인세가 약 50% 웃돌고 있음

○ 소득세는 배당수입 확대로 약간 증가했고, 주세도 더위 때문에 맥주 출하가 대폭 늘어나 세수증가에 한몫하고 있음

○ 그러나 법인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월기 결산기업의 납세는 하반기 이후 본격화되기 때문에 증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부분도 있음

〈국회도서관 일일외국신문정보 11/2〉

재정 정책

월가, 그린스펀의 美적자 심각성 지적 '낙관성 경고' 분석

□ 미국의 경상적자가 심각해 향후 달러 가치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지적은 '낙관성 경고'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월가 전문가들이 19일(이하 현지시각) 분석

□ 경제금융정보 전문서비스 블룸버그와 다우존스는 그린스펀이 선진-신흥국간 베를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연석회의 참석에 앞서 이날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금융인 모임에 참석해 이렇게 발언하면서도 "시장이 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강조한 데 대해 전문가들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고 전함

□ 뉴욕 소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피터 크레츠머 애널리스트는 다우존스에 "그린스펀이 과거에도 (외환시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번처럼 강도가 센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그린스펀이(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점진적'으로 고쳐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언급

○ 크레츠머의 이런 표현은 FRB가 그간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음에 빗댄 것임. 그린스펀은 앞서 부시 행정부의 적자재정 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시사

○ 크레츠머는 "그린스펀이 의도적으로 적자 문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라면서 "경상적자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 정도로 확대된 상태에서 달러 약세가 이어지자 (FRB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분석

□ 뉴욕 소재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CSFB)의 수석 통화전략가 라라 라메도 다우존스에 "그린스펀의 이번 발언을 의미 있게 봐야 한다"면서 "FRB가 달러 약세를 용인한다는 점과(적자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라고 지적

○ 라메는 또 그린스펀이 이런 민감한 발언을 유럽에서 했다는 '장소의 의미'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G-20 회동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장 클로드 트리셰 총재와 만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달러 하락에 대한 우려란 측면에서 그린스펀과 트리셰간에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계산이라고 언급

□ 그린스펀의 '낙관성 경고'라는 시각은 일본계 금융회사 쪽에서도 나옴

○ 뉴욕 소재 다이와증권의 마이클 로란 애널리스트는 다우존스에 "FRB 의장이 긍정적 기조를 유지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만약 그가 비관적인 신호를 시장에 던지면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

○ 그린스펀이 적자 문제의 심각성을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부각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전망이 결코 어둡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해 시장을 안심시켰다는 것임

○ 로란은 그 근거로 그린스펀이 "미국의 경상적자로 인해 향후 달러 투매가 촉발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중앙은행이 이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장이 장기적으로 그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한 점을 지적

□ 블룸버그도 19일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개리 스턴 총재가 이날 미국 내 한 모임에서 "시장경제가 (경상적자로 인한 문제를) 늘 잘 조정해 왔다"면서 따라서 "(경상적자의 심각성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속단하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함

□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에서 130억달러의 자금을 운용하는 마크 스핀 델도 블룸버그에 "FRB가 고질적인 경상적자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하면서 달러 약세가 인플레 측면에서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임

□ 미 상원 금융위원장인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공화·앨라배마 주)도 한 회견에서 "적자를 축소하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

□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FRB 지도부가 이미 지난 6월에 경상적자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분석을 실무진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면서 지난 9월 21일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경상적자를 "우려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회의록은 지난 주 공개됨

〈연합뉴스 11/20〉

日 기업, 연구개발투자 강화 추세

– 경기회복에 따른 실적회복을 배경으로 연구개발투자 강화 –
– 정밀기기, 의약품 및 전기기기 분야가 연구개발투자를 주도 –

□ 일본 기업들이 실적회복을 배경으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연구개발(R&D)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 일본 경제신문사의 '2004년도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4개사 중 3개사가 연구개발비를 전년도보다 증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도의 연구개발비 합계금액은 9조 1,976억엔으로 전년도 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8년 만에 5%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NTT도코모의 축소에 따라 NTT그룹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응답기업 225개사 중 약 75%가 전년도보다 연구개발비 투자를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업종별로는 정밀기기가 10.1%로 두 자릿수의 증가, 의약품(7.0%) 등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부문 합계액이 4조엔 정도에 달하는 전기기기도 6.5%의 증가로 전체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

○ 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이유는 "경쟁이 치열하여 연구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회답한 기업이 전체의 40.1%에 이르고, 이어서 "신 분야·신규사업에의 참여·개척"이 29.9%를 상회해 본업 중시의 자세가 엿보이고 있음

○ 5년 후의 연구개발비 예측에서는 2003년도 실적보다 늘릴 것이라는 기업이 55.3%의 과반수를 점해 대체로 변화는 없을 것(24.4%)이라는 응답을 상회

○ 다만 향후 5년간 국내외의 연구개발 거점을 늘린다는 기업은 20.3%에 불과하고 대신 대학, 타 기업 등 외부 위탁을 확대하기 위해 산학연계를 중시하는 기업이 51.7%에 달함

□ 한편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 조사 항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책임자들은 기존의 구미지역과 더불어 향후 중국과도 기술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구개발 부문의 국제경쟁력은 10년 후에 중국이 일본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은 미국이 1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본과 유럽이 대체로 경합하는 구도가 지속되면서 국가간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일본·유럽·중국·러시아·한국·대만·싱가포르 8개국 지역에 대해 현재와 10년 후의 연구개발력을 5점 만점으로 평가, 예측을 하도록 했는데, 중국은 현재 러시아와 함께 최하위권으로서 1위의 미국, 2위의 일본, 유럽과는 1.4점 이상의 격차가

있다고 평가

○ 그러나 제조업만이 아니고 IT, 바이오 부문에서도 급속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국은 10년 후에는 평균 3.8점으로 급상승해 미국, 일본, 유럽의 뒤를 이를 것으로 예상

○ 한편 한국, 대만도 연구개발력이 높아지긴 하나 중국이 이를 상회하는 페이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KOTRA 경제무역정보 11/24〉

美, "위안화 가치 올려라" 파상 공세

– 고정환율제 때문에 적자 누적 … WTO제소 경고 –

□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의 고정환율제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셈

○ 의회에서는 중국을 환율조작 혐의로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는 요구까지 터져 나오고 있음

○ 중국이 환율을 묶어 무역상의 불공정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주장으로 중국의 환율문제는 대선과정에서 존 케리 민주당 후보의 표적 중의 하나였을 정도로 미국 재계의 오랜 불만사항임

□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주말 WTO제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미 무역대표부의 니나 모르자니 대변인은 12일 성명서에서 "WTO제소는 중국의 환율정책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 온 미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

○ 이는 제소는 않지만 1달러당 8.28위안으로 묶어놓은 중국의 고정환율제를 풀도록 하려는 미국의 압력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입증

□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지난 9월까지 155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무역적자가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중국 위안화 때문이라고 비판

○ 실제 중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붙잡지 않고 시장에 맡겨 놓았다면 위안화도 유로화나 엔화처럼 큰 폭의 평가절상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임

○ 유로화나 엔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 가치는 12일(현지시간) 5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이는 달러화의 가치가 연일 추락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앞으로 약달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국제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

□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경상적자와 재정적자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

○ 부시 2기 행정부에서도 감세정책이 계속 추진되면서 이라크전 같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이 강화된다면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

□ 9월말 현재 6,300억달러에 달한 미국의 무역적자도 미국 국민소득(GDP)의 5%를 넘어서는 규모임

○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런 적자는 나라 자체를 파산시킬 수 있지만 미국은 세계화폐인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찍으면 해결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그만큼 달러가 세계 각국에 더 풀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임

□ 미국으로서는 무역적자를 줄여주고 미 기업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달러를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지난 90년대 미국 경기가 좋을 때는 국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도 수입 물가를 떨어뜨릴 강한 달러가 필요했지만 미 경제의 거품이 꺼진 뒤에는 그럴 필요도 없음

〈문화일보 11/15〉

중국, 2034년까지 고속성장 가능할까?

□ 중국이 향후 30년간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이 질문에 대해 차이나데일리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8일(현지 시간) 지적

○ 차이나데일리는 9%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고속성장으로 정의하며 중국이 고속성장을 하기 위해선

○ 첫째, 노동산업의 질적 변화 및 높은 개인저축률 유지

○ 둘째, 경제성장을 주도할 만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 그러나 현재의 정부 주도 성장체제하에서는 두 가지 전제를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신문은 우려

○ 이는 앞으로 중국의 노동력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며 자원과 소비에 기반한 성장구조 역시 장기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라 지적

◆ 중국 경제 "규모는 커졌으나 내실은 빈약"

□ 중국 경제는 1970년대 말 경제개방 이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음

○ 국내총생산(GDP), 대외교역 등 경제 각 부문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한 나라로 평가받았고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했음

○ 1978년부터 2003년까지 25년간 중국은 연평균 9%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이적 발전을 계속해 왔음

○ 작년 말 기준 중국의 GDP는 11조위안(1조 3,300억 달러)으로 세계 6위이며 구매력 평가(PPP) 기준에서는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올랐으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도 날로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점치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음

○ 특히 대형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금융권 개혁, 증권시장 규제, 민영기업 발전방안 등이 선결 과제로 거론되고 있음

○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정부도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경제성장에 비하면 중국인들의 생활수준도 매우 낙후된 상태

○ 중국의 1인당 GDP는 일본 등 아시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음

○ 세계은행(WB)은 PPP 기준 중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의 1950년대 1인당 GDP와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저조하다고 분석한 바 있음

○ 이는 중국의 1인당 GDP가 워낙 낮은 수준에서 경제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1인당 GDP에서 일본이나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아직도 상당기간이 걸린다는 의미

◆ 노동력 공급둔화 시작… 출생률 저하 · 노령화 가속

□ 저가 노동력은 중국의 성장신화를 창출해 낸 핵심 요인

○ 중국은 13억의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저가의 양질 노동력을 꾸준히 공급, 세계 제조업의 기지 역할을 담당했음

○ 노동력의 지속적인 유입은 개인들의 저축능력 향상으로 이어졌으며 중국의 저축률은 43%로 세계 최고수준임

□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과 급속한 노령화로 노동시장 경쟁력은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중국 정부가 1970년대부터 강력하게 실시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중국 출생률은 최근 수년째 감소하고 있음

○ 중국의 출생률은 한국, 일본 등 신흥 동아시아 국가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노동가능 인구 성장률이 오는 2015년에 '0(zero)'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노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중국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8%에서 20%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때 연금생활자도 노동가능인구의 40%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할 것이라고 전망

□ 중국이 노동인구 상당수를 낙후된 서부내륙 지방에서 조달해 왔다는 점도 노동력의 지속적인 증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 지난 25년 동안 1억 6천만명의 인구가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 부문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용 노동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며 이는 현재처럼 노동력 공급에 의존한 경제성장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의미

◆ 기술력 낙후 · 기업경쟁력 저하로 생산성 향상도 우려

□ 장기 성장의 토대가 되는 생산성 향상도 많은 한계에 봉착해 있음

○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직도 산업화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이미 후기 산업화에 진입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기술력 강화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

○ 세계은행은 중국의 생산성이 기술발전보다 전적으로 노동력 투입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으며 농업→비농업 부문으로의 산업간 노동력 이동이 둔화되는 시기에는 중국 경제의 생산성도 크게 저조했다고 지적

□ 자원 과소비와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

○ 중국이 제조업 붐을 일으킨 것은 몇몇 경제개발구역에서 자원과 환경을 희생하며 제조업 성장에만 집중한 결과

□ 신문은 중국 경제가 GDP의 40%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단행함에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없는 이유가 바로 현재의 정부주도 성장방식 때문이고 지적하며 환경을 훼손하는 경제성장을 제한하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하며 경쟁력 있는 기업은 과도한 자원소모가 아닌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

〈edaily 11/09〉

독일, 통일 후유증으로 고전

– 우리나라도 통일 이후 철저한 대비 필요 –

□ 독일 경제가 통일 이후 장기적인 침체, 실업, 재정악화, 기업의 해외 탈출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도 통일 이후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옴

□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통일 후유증과 독일 경제개혁의 현주소』라는 보고서에서 유럽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했던 독일이 지난 1990년 통일된 이래 통일 후유증으로 유럽 경제의 문제아로 전락했다고 지적

○ 연구소는 1996~2000년 독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8%로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보다 1%p, 미국보다는 2.3%p가 각각 낮으며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독일 경제부진의 3분의 2가 통일 후유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고 소개

○ 연구소는 또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의존도가 30%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데다 내수기반이 취약해 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동유럽과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하고 있어 산업 공

동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힘

○ 연구소는 이와 함께 1990년 당시 6.4%였던 독일의 실업률은 올 8월 현재 10.6%로 상승했고 옛 동독의 실업률은 지난 2년 사이 15%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지적

○ 연구소는 실업증가는 사회복지비용 지출과 옛 동독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이어져 1980년대 말 흑자를 달성했던 독일의 재정도 EU의 제재를 받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설명

○ 뿐만 아니라 통일 직후 1996년까지 통일 특수로 인해 서독보다 높았던 동독의 경제성장률은 1996년 이후 연평균 1.0%에 그치며 서독의 1.3%보다 떨어져 동·서독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

□ 연구소는 이에 따라 독일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실업수당 축소 등을 담은 아젠다(Agenda) 2010과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된 상점 영업시간 자유화 등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여건과 국민여론 등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

□ 김득갑 수석연구원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통일 후유증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

〈연합뉴스 11/02〉

정책흐름

1. 보유세제 개편방안 - 개편안 주요내용과 쟁점 -
2. 2004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3. 현금영수증제도 시범운영 관련 현황

보유세제 개편방안

- 개편안 주요내용과 쟁점 -

※ 이 자료는 2004년 11월 23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 개편안 주요내용과 쟁점」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Ⅰ. 보유세 현황

1. 부동산 관련 지방세

거래단계(광역시·도세)	⇒	보유단계(시·군·구세)
○ 취득세 2% ○ 등록세 3%		○ 재 산 세 0.3~7% ○ 종합토지세 0.2~5%
['03년 세수 : 13조원]		['03년 세수 : 2.5조원]

2. 문제점

① 거래세 부담은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음

○ 보유부담이 낮기 때문에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사두는 것이 수익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부동산을 선호하는 원인이 되고

– 보유세에 의한 투기억제 내지는 과다보유 억제 기능이 미흡함

○ 거래세 부담이 높아(취득액의 5.8%) 원활한 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문제가 발생함

② 땅값이나 집값이 비싼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의 격차가 큼

※ 서울 강남구 : ('03) 1,340억원 → ('04) 1,900억원 (+560억원)
강원 인제군 : ('03) 7.2억원 → ('04) 6.8억원 (△0.4억원)

③ 현행 보유세제의 과표책정상의 문제,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아니하는 과세방법, 비합리적 세율체계 등으로 인하여 지난 7월에 재산세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과표)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시가에 비례적이 아니며 부동산별 편차가 심함

○ 토지과표는 시·군·구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과표현실화율이 다름

※ 토지과표현실화율 : (최저) 파주시 35.3%~(전국평균) 39.2%~(최고) 울릉군 47%

○ 건물과표는 시가보다는 면적, 구조, 건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책정

⇒ 집값은 싼데도 지방의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재산세를 더 많이 냄

○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별도의 과표와 별도의 세율로 과세

□ (세율체계)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것을 감안하여

○ 다단계의 높은 누진세율체계로 되어 있어 과표가 조금만 올라도 세금이 급증

※ (예) 재산세 : (최저세율) 1,200만원 이하 0.3%~(최고세율) 4,000만원 이상 7%

• 과표차이는 3.3배(1,200→4,000)에 불과한데 세율차이는 23배(0.3→7)

* 〈사례1〉 현재는 재산세를 면적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므로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세금이 많음

	면 적	기준시가	'03 세액	'04 세액
· 대전 APT	75평	3.2억원	155만원	79만원
· 강남 APT	26 〃	3.6 〃	9 〃	17 〃

* 〈사례2〉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하여 토지면적이 넓어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아파트보다 세금이 많음

	면 적	시 가	'03 세액	'04 세액
· 서초 APT	44평	9억원	23만원	89만원
· 노원 단독	94 〃	9 〃	394 〃	432 〃

Ⅱ. 개편안 주요내용

1. 개편 목적

□ 토지 공시지가 상향조정 등에 따라 현행 보유세제를 개편하지 아니할 경우에

○ '05년의 세부담이 급증(연간 6,000억원, 20% 증가)하게 되므로 개편을 통하여 세부담 증가를 절반수준(약 3,000억원, 10% 정도 증가)으로 완화

□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 부동산 가격에 상응하게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 국민들이 소유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 예측가능하게 함

□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

○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함으로써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

○ 거래세를 완화하여 원활한 부동산 거래 유도

□ 지역균형발전지원

○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

2. 개편 기본골격

□ (보유세 강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함

□ (과세체계) 재산가액(시가)에 상응하게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책정기준과 과세방법을 획기적으로 개편함

○ 토지·건물의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통합과세하며
※ 현재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구분과세
○ 복잡하고 급진적인 누진세율체계를 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완만하게 하며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함

□ **(종합부동산세 신설) 주택·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이원화함**
○ (1차) 시·군·구 : 낮은 세율로 재산세 과세
(2차) 국 가 : 전국의 소유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기준가액 초과분은 높은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어려운 시·군·구에 우선 지원
○ 종합부동산세 세액 중 지방세로 과세된 부분은 전액 공제

3. 거래세 완화방안

① 금년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5. 1. 1부터 부동산 등록세율 인하
○ 모든 거래에 적용 : 3% ⇒ 2%(1/3 경감)
○ 주택·건물에 대한 개인간의 거래는 0.5% 추가인하 : 3% ⇒ 1.5%(1/2경감)

현 행	개 편 안
취득세 2%(농특세 포함 2.2%) 등록세 3%(교육세 포함 3.6%)	취득세 현행대로 등록세 2%(2.4%) → 개인간 거래 1.5%(1.8%)
계 5%(5.8%)	계 4%(4.6%) → 개인간 거래 3.5%(4.0%)

② 이에 추가하여 각 시·도가 자체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함
○ 현행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으며,
○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각 시·도의 실정에 맞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함
※ 앞의 (①과 ②)를 합하면 거래세 인하폭은 1%(1.5%)+α가 됨

③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대로 200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부동산계약서사본제출제도가 시행되면
○ 개인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등록세가 과세되어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 내년 상반기중에 지방세법(또는 조례)을 개정하여 개인간 거래시 실거래과세에 따른 거래세 부담 증가분에 대해 감면함
※ 신규 아파트 분양자는 등록세율이 인하되는 2005. 1. 1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인하된 등록세율 적용
※ 등록세율 인하 적용일은 등기일 기준임

4. 보유세 개편방안

가. 부동산별 과세방법

	현 행	개 편 안	
		1차(시 · 군 · 구) 재산세	2차(국가) 종합부동산세
주 택	○ 토지 · 건물 구분평가 · 구분과세 • 토지 : 종토세(0.2~5%) • 건물 : 재산세(0.3~7%)	○ 통합평가 · 통합과세 ○ 낮은세율(0.15~0.5%, 3단계)로 재산세 과세	○ 소유주택가액 9억원 초과분은 높은 세율(1.0~3.0%, 3단계)로 과세
나대지	○ 종토세 0.2~5%	○ 낮은세율(0.2~0.5%, 3단계)로 과세	○ 소유나대지가액 6억원 초과분은 높은세율(1.0~4.0%, 3단계)로 과세
빌딩 · 상가 · 사무실 등 부속토지	○ 종토세 0.3~2%	○ 낮은세율(0.2~0.4%, 3단계)로 과세	○ 소유토지가액 40억원 초과분은 높은 세율(0.6~1.6%, 3단계)로 과세
사업용 건물	○ 재산세 0.3%	○ 세율인하(0.25%)	(과세 안함)

※ 현재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과세하고 있으나 개편 이후에는 지방세는 재산세로,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로 함

나. 세율체계

□ 주택에 대한 세율

현 행				개 편 안		
재산세(건물)		종합토지세(토지)		(건물 + 토지)		
1,200만원 이하	0.3%					
1,600 〃	0.5					
2,000 〃	1.0	2,000만원 이하	0.2%			재산세
3,000 〃	3.0			4,000만원 이하	0.15%	
4,000 〃	5.0	5,000 〃	0.3			
4,000만원 초과	7.0	1억원 이하	0.5	4,000만 ~ 1억원	0.3	
		3 〃	0.7	1억원 초과	0.5	
		5 〃	1.0			
		10 〃	1.5	4.5억 ~ 10억원	1.0	종합부동산세
		30 〃	2.0			
		50 〃	3.0	10억 ~ 50억원	2.0	
		50억원 초과	5.0	50억원 초과	3.0	
0.3 ~ 7%(6단계)		0.2 ~ 5%(9단계)		1차(시 · 군 · 구) : 0.15 ~ 0.5%(3단계) 2차(국 가) : 1.0 ~ 3%(3단계)		

□ 나대지 등에 대한 세율

현 행		개 편 안		
2,000만원 이하	0.2%			
5,000 〃	0.3	5,000만원 이하	0.2%	재산세
1억원 이하	0.5	5,000만 ~ 1억원	0.3	
3 〃	0.7	1억원 초과	0.5	
5 〃	1.0			
10 〃	1.5	3억 ~ 10억원	1.0	종합부동산세
30 〃	2.0			
50 〃	3.0	10억 ~ 50억원	2.0	
50억원 초과	5.0	50억원 초과	4.0	
0.2 ~ 5%(9단계)		1차(시 · 군 · 구) : 0.2~0.5%(3단계) 2차(국 가) : 1.0~4.0%(3단계)		

※ 나대지등 : 지상정착물이 없는 주차장 등 나대지, 잡종지, 시지역 농지 · 임야 공장이나 빌딩 · 상가 · 사무실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등

□ 빌딩 · 상가 ·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에 대한 세율

현 행		개 편 안		
1억원 이하	0.3%	2억원 이하	0.2%	재산세
5 〃	0.4			
10 〃	0.5	2억 ~ 10억원	0.3	
30 〃	0.6	10억원 초과	0.4	
50 〃	0.8			
100 〃	1.0	20억 ~ 100억원	0.6	종합부동산세
300 〃	1.2			
500 〃	1.5	100억 ~ 500억원	1.0	
500억원 초과	2.0	500억원 초과	1.6	
0.3 ~ 2%(9단계)		1차(시 · 군 · 구) : 0.2~0.4%(3단계) 2차(국 가) : 0.6~1.6%(3단계)		

다. 기타 부동산에 대한 과세방법

□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 공장, 골프장, 별장 등에 대해서는 물건별로 단일세율(낮은세율 또는 중과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 이들 부동산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단일세율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함

부동산 종류	현 행	개편안(재산세)	구 분
• 농지	종토세 0.1%	토지분 0.07%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공장	종토세 · 재산세 0.3%	토지분 0.2%, 건물분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종토세 · 재산세 5%	토지분 · 건물분 4%	
• 별장	종토세 · 재산세 5%	주택분 4%	

□ **(Sur-tax)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지방세)에, 농특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부가하여 과세**

	현 행	개 편 안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종토세액의 20%	재산세액의 20%
• 농 특 세	종토세액 500만 ~ 1천만원 : 10% 1천만원 초과 : 15%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라. 보유세 과세표준

현 행	개 편 안
○ 주택 :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 • 토지 : 공시지가 × 지자체적용률 (평균 39.2%) • 건물 : 신축원가 × 각종지수 × 면적 (㎡당 18만원) ○ 건물 : 신축원가 × 각종지수 × 면적 (㎡당 18만원) ○ 토지 : 공시지가 × 지자체적용률 (평균 39.2%)	○ 주택 : 토지 · 건물을 통합평가 • 아파트 등 공동주택 : 국세청기준시가 × 50% (시가의 70~90%) • 단독주택 : 공시개별주택가액 × 50% ※ 건교부에서 금년중에 부동산가격공시법을 개정하여 '05. 4. 30경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액을 최초로 공시할 계획임 ○ 건물 : 신축원가 × 각종지수 × 면적 × 50% (㎡당 46만원) ○ 토지 : 공시지가 × 50%

마. 종합부동산세

□ **주택, 나대지, 빌딩·상가·사무실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여부 판정**

○ 주 택 : 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국세청기준시가 9억원 초과

○ 나대지 :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공시지가 6억원 초과

○ 빌딩·상가·사무실 등 부속토지 :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공시지가 40억원 초과

〈참 고〉

- 부부가 각각 주택소유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각각 계산하여 판정
- 오피스텔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포함
- 사업용 건물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
- 농지, 임야(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임야) 등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하되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 등은 나대지 등으로 분류됨(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임대사업용 주택은 인별합산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임대주택법을 근간으로 하여 시행령으로 구체화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수 : 약 6만명 내외(중복인원 감안)**

○ 주 택 : 3만 ~ 3.5만명

○ 나대지 : 3만명

○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 : 8천명

□ **종합부동산세 : 2005년의 경우 약 6천억~7천억원 수준**

□ **(종합부동산세 배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순서로 배분**

○ '04년보다 세수가 감소한 시·군·구

○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

○ 기타

〈참 고〉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사례

사 례 : 기준시가 20억원(과표 10억원)짜리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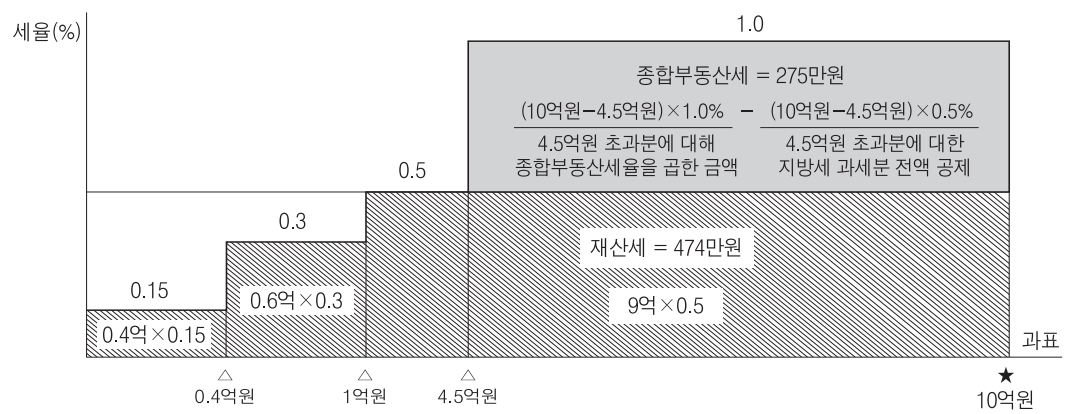

바. 세부담 증가수준

□ **전체적인 세부담 수준**

○ 개편후 시행 첫해인 2005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전체 세수는 금년(3.2조원)보다 10% 정도 증가하는 3.5조원 수준이 될 것임

□ **개별 세부담 상한선**

○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과세가 정상화될 것이나

○ 그동안 가격(시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세를 적게 내왔던 부동산의 경우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전년 대비 개별세액이 50%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한선을 제도화

※ 세부담상한선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함

〈계산사례〉

$$\frac{\text{2004년 보유세액}}{\text{100만원}}$$

$$\frac{\text{2005년 개편된 세법에 따른 세액}}{\text{200만원}}$$

$$\frac{\text{2005년 세부담 상한선}}{\text{150만원(100만원+100만원×50\%)}}$$

└→ 2005년에는 150만원만을 납부하면 됨

사. 부과·징수

□ **과세기준일 : 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과세함**

○ 6월 1일 현재 소유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정

□ **납부기한**

현 행	개 편 안		
○ 재산세 : 7월말 ○ 종토세 : 10월말	(7월말)	건물분 재산세 전액	지방세
		주택분 재산세 1/2	
	(9월말)	토지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재산세 1/2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	국세

□ **종합부동산세(국세)는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필요시 시·군·구에 위탁)**

○ 12월 1일~15일 부동산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 자진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의 3%를 세액공제

아. 시행시기

○ 11~12월중에 법안 국회심의 후 통과시

○ 2005년도 과세분(2005년 하반기 최초 부과)부터 적용함

※ 제·개정 대상 법률

- 종합부동산세법안 제정
- 국세기본법 등 3개 세법] 재경부(4개)

- 지방세법
- 지방교부세법] 행자부(2개)

Ⅲ. 주요 쟁점사항

① 현재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개편해야 하는가

□ **보유세제 개편은 참여정부 출범 이래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고 총선공약 사항임**

○ 대국민 신뢰성 차원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이번에 개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면 내년에는 불공평문제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임

□ **또한, 내년 종토세 과세시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18.6% 인상되었기 때문에**

○ 보유세제를 개편하지 아니하고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 내년의 종토세가 올해('04년)보다 25%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금년에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건축허가 면적의 감소추세, 내수회복의 지연 등 여러 가지 경제 · 사회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현행세제를 그대로 둔다면 내년에는 보유세가 6,000억원 정도 증가될 것이나

○ 이번 개편으로 6,000억원 중 3,000억원을 줄여서 약 3,000억원(금년 대비 10%)만 증가되도록 하였음

□ **또한 개별적인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04년 대비 50%)을 신설하였으며**

○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임대주택공급 지원)

② 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하는가

□ **2003년의 경우 거래세수는 13조원으로 보유세수 2.5조원의 5배 수준임**

※ 선진 외국의 경우는 보유세 부담은 높고 거래세 부담은 낮음

(거래세 : 보유세) 한국 7:3, 일본 2:8, 미국 2:8

□ **단순히 실효세율 수준을 가지고 비교 평가할 수는 없으나**

○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대략 1% 정도이나

○ 국토면적이 좁아 투기문제가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12% 정도로서 낮은 수준임

□ **보유세 부담이 낮아 부동산을 사두는 것이 저축하는 것보다 수익측면에서 유리한 경우에**

○ 차별적인 조세제도로 인하여 투자나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 부동산을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 됨

□ **또한, 거래세 부담이 높아(취득액의 5.8%) 원활한 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문제가 발생함**

③ 거래세는 얼마나 낮아지나

□ **등록세 ·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두가지로 구분됨**

① 거래내용이 나타나는 경우 (예) 아파트분양 법인과의 거래

⇒ 현재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 등록세를 3%에서 2%로 인하시 거래세 전체 부담은 5.8%에서 4.6%로 세금액수는 20.7% 줄어듬

② 거래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예) 개인간 거래

⇒ 현재 지방세 과표로 과세하고 있으나 주택 및 건물과표변경에 따라 과표가 인상됨

- 토지 : 공시지가 →(현행과 같음)
- 건물 : ㎡당 18만원 기준 → ㎡당 46만원
- 주택 : 토지 · 건물 구분 평가 → 국세청기준시가로 통합평가

⇒ 즉, 건물, 주택은 과표인상을 감안하여 등록세율을 3%에서 1.5%로 인하시 거래세 전체 부담은 5.8%에서 4%로 세금액수는 31% 줄어듬

④ 종합부동산세는 동일 부동산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것으로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이중과세가 아님

□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결정(헌법불합치)의 이유는

○ 중복과세 그 자체가 아니고

○ 토초세가 과세된 토지양도시

○ 토초세의 일부만을 양도세에서 공제하였기 때문임(즉, 일부는 공제 안함)

□ 종합부동산세는 시 · 군 · 구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하므로 이중과세문제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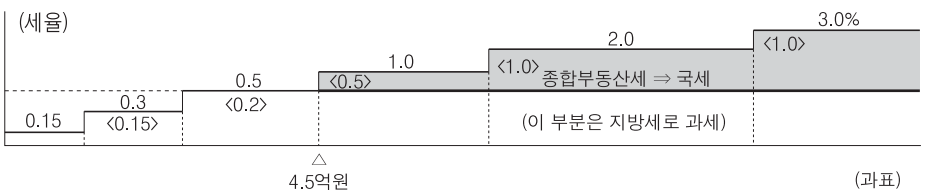

⑤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닌지

□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임

○ 즉, 보유 그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님

□ 현재도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토지) 또는 재산세(건물)를 과세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과세하고 있음

※ '94. 7. 29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미실현이득 관련 부분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 과세소득의 특성 ·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⑥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 아닌가(채무는 공제 후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부유세가 아님**

□ **부유세는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net wealth)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부과하는 보유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름

※ 부유세와 보유세의 차이

- 기준시가 3억원인 주택에 2억원의 담보설정시
- 보유세 과표 : 3억원
- 부유세 과표 : 1억원 (3억원 – 2억원)

□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나대지, 상가 등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 각각 별도의 세율로 과세됨

⑦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인별과세시 재산분산등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회피가능)

□ **부부합산 등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소지가 큼**

※ 2002. 8. 29 소득세법상 자산소득(이자 · 배당)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규정 위헌결정

□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족 등 타인명의로 분산등기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며

○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재산권을 보호받지도 못하고, 과징금 등 처벌도 받게 됨

※ 증여세 비과세 한도(10년간 누적 한도)

- 부부 : 3억원
- 자녀 :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 친척 : 500만원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 무효
-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최고 30%)
-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⑧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되는 것은 아닌지(지방재정자립도를 낮춰 지방자치원리에 역행)

□ **전국의 주택 · 토지를 인별로 합산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 지방세의 성격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 지자체는 자기관내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

○ 보유세수의 서울 등 수도권 집중현상(부익부 · 빈익빈 심화)을 완화하기 위하여

※ 서울 강남구 보유세수 : (03년) 1,340억원 → (04년) 1,900억원(+560억원)

강원 인제군 보유세수 : (03년) 7.2억원 → (04년) 6.8억원(△0.4억원)

○ 국세로 하되, 전액을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자는 것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지원

□ **지방분권의 문제는**

○ 과세권을 누가 행사하는가보다

○ 지방재정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가임(특히,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하여)

⑨ **보유세는 지자체의 주민서비스 재원으로 필요한데 국세로 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 **수도권의 경우 정부의 투자, 예를 들면 도로, 교통, 공공시설 등이 집값이나 땅값에 영향을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 단순한 청소나 도로정비 등의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청이 보유세수를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보유세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징수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을 줌

□ **지자체는 자기관내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 전국의 주택·토지를 인별로 합산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의 성격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⑩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시·군·구가 반대한다는데**

□ **'04. 10. 19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강원도 춘천에서 모임을 가지고**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작성하여

○ 전국의 190개 시·군·구청장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음

※ 종합부동산세 자체에 대하여가 아니라 국세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 **'04. 11. 12 군수협의회에서는 입장을 달리하여**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도입하되

※ 종부세 지방세 도입시 시·군·구간 부익부·빈익빈 심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부유한 자치단체에 예속 우려

○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교부세로 골고루 배분해 줄 것을 건의(재경부, 행자부)

※ 04. 11. 15~11. 19, 재경부·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편안 설명 및 의견수렴 예정

⑪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보다 지방공동세로 하는 방안은**

□ **지방세의 국세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 등 비난소지를 해소하고**

○ 국세·지방세의 이원화에 따른 납세 및 행정비용 절감 등 장점은 있으나

□ **시·군·구세로 징수한 세액을 타 시·군·구에 이전하는 것은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실현 곤란**

□ **지방공동세는 외국의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배분 절차 및 주체 지정 불가**

○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임의단체 성격이므로 배분주체로 부적격하며 지방공동세는 외국의 선례가 없음

※ 독일의 공동세는 연방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임

⑫ **보유세 개편을 위한 사전준비는 되어 있는지**

□ **그동안 내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전산 및 평가제도 개선 등 사전준비를 하여왔음**

□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 확정된 '03. 10. 29 이후 종토세 과세DB를 분석하고**

○ 종토세 DB와 재산세DB를 바탕으로 주택통합DB를 구축함

□ **단독주택 평가기법 개발 및 공시**

○ 건교부에서 지난 하반기부터 한국감정원을 조사기관으로 선정하여 단독주택에 대한 시가평가 작업을 준비해 왔으며

○ 금년중에 부동산가격공시법을 개정하여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하여도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 '05. 4. 30 이전에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액을 최초로 공시할 계획임

※ 단독주택 표본설계 및 평가기법 개발 완료 : 10. 20
표준주택 가격조사 : 12. 9,
개별주택 가격산정 : '05. 3. 2

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를 9억원(주택) 초과자로 하여 과세대상자와 아닌 사람간의 세부담 불형평이 발생하고 기준금액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넓은세원·낮은세율 원칙에 부합되는지)

□ **현재도 보유세는 누진세율체계이며**

○ 종합부동산세는 실질적으로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을 국세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며

○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낮추어 과세대상자 수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국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커지는 대신에 지방세 부문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하여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아니며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세율차이)만큼 세금이 증가되는 것임**

〈예〉 기준시가 9.2억원(과표 4.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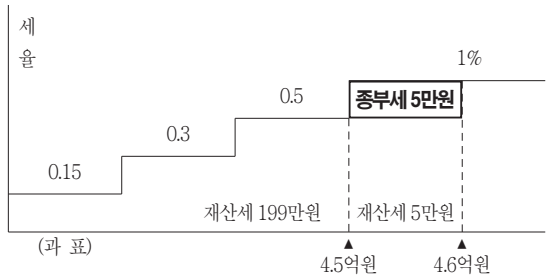

9억원(과표 4.5억원)	9.2억원(과표 4.6억원)	차 액
재산세 199만원 종부세 0	재산세 204만원 종부세 5만원	5만원 5만원
계 199만원	계 209만원	10만원

⑭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간 과표상 불균형 문제는 없는지

□ **현재 단독주택은 APT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와 같은 통합과표가 없으나**

○ 금년중에 건설교통부가 부동산가격공시법을 개정하여 '05. 4. 30 이전에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개별주택가액을 최초로 공시할 계획임

※ 단독주택 표본설계 및 평가기법 개발 완료 : 10. 20
표준주택 가격조사 : 12. 9,
개별주택 가격산정 : '05. 3. 2

□ **단독주택에 대한 새로운 과표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 시가 반영비율도 APT와 형평이 맞도록 할 것임

※ 국세청기준시가 시가반영률 : 80% 내외

□ **또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현행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할 계획임

※ 부동산가격공시법(안)에 관계규정 보완

※ '05년의 경우 국세청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계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을 보완할 계획임

⑮ 과표현실화로 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 과세표준은 시가(재산가액)를 반영하여 현실화하되

○ 토 지 : 공시지가의 39.2%→공시지가의 50%

○ 아파트 : 토지·건물 구분평가→국세청기준시가의 50%

□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였음

○ 급격한 누진세율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 소규모 주택을 소유한 서민가계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택에 대한 최저세율은 인하하였음

○ 개별세부담 상한선을 '04년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 '05년 전체 세부담 증가율을 '04년(3.2조원)의 10% 수준으로 하였음

□ 또한, 내년 종토세 과세시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18.6% 인상되었기 때문에

○ 보유세제를 개편하지 아니하고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내년의 보유세가 올해('04년)보다 20% 이상(약 6,0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 이번 개편으로 6,000억원 중 3,000억원을 줄여서 금년대비 10%만 증가되도록 하였음

⑯ 개편후 세부담은 어떻게 변하는가

□ 아파트 : 면적이 넓고 시가가 낮은 아파트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시가가 높은 아파트는 세부담이 증가

실제납부세액

APT(평형)	기준시가	'04년		'05년					
		세 액	세부담률	세 액	증가율	세부담률	세 액	증가율	세부담률
• 일산 쌍용(22)	0.9억원	6.5만원	0.07%	7.5만원	15%	0.08%			
• 남원 현대(61)	0.9	14.8	0.16	7.5	△50	0.08			
• 분당 우성(17)	1.5	5.6	0.03	17.6	215	0.10	8.4만원	50%	0.06%
• 노원 주공(35)	1.4	13.9	0.10	15.4	11	0.10			
• 충주 삼일(75)	1.4	24.9	0.17	15.6	△37	0.10			
• 군포 백두(35)	2.0	9.2	0.05	25.0	171	0.12	13.8	50	0.07
• 대구 진로(78)	2.0	94.8	0.48	23.7	△75	0.12			
• 구의 현대(32)	3.5	17.7	0.05	62.1	251	0.17	26.5	50	0.08
• 목동 나산(43)	3.5	116.6	0.33	61.1	△47	0.17			
• 대치 삼성(40)	8.5	78.8	0.09	186.5	136	0.22	118.2	50	0.13
• 잠원 롯데(52)	8.2	131.9	0.16	178.8	35	0.22			
				50% 상한 미적용시			50% 상한 적용시		

□ 단독주택 : 토지지분이 넓어 시가에 비해 높은 세부담을 했던 단독주택은 세부담이 감소

소재지 및 평형 (단독은 대지평수)	기준시가	'04년		'05년		
		세 액	세부담률	세 액	증가율	세부담률
• 서울 강남(99)	17.4억원	561.4만원	0.32%	617.0만원 (208.0)	10%	0.35%
• 서울 노원(94)	6.4	432.2	0.68	133.0	△70	0.21
• 경기 과천(99)	5.0	248.0	0.50	99.5	△60	0.20
• 경기 파주(99)	3.7	386.5	1.04	66.9	△83	0.18
• 대구 수성(69)	2.6	78.7	0.30	39.7	△50	0.15

※ ( )는 종합부동산세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APT의 세부담 사례

소재지 및 평형	기준시가	'04년	'05년 (50% 상한 적용전)			'05년 실제 납부액		
		세 액	세 액	지방세 (재산세)	국세 (종부세)	상한세액	지방세	국 세
• 강남(73)	16.0억원	306만원	550만원 (80%)	375만원	175만원	459만원 (50%)	375만원	84만원
• 잠실(52)	11.1	126	302 (140%)	250	52	189 (50%)	189	0

⑰ 이번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 11월중에 법안을 제출하여 국회심의를 거쳐

□ 2005년도 과세분(2005. 7월 최초 과세)부터 적용함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현 행	개 편 안
○ 재산세 : 7월말 ○ 종토세 : 10월말	(7월말) 건물분 재산세 전액 — 주택분 재산세 1/2 — 지방세 (9월말) 토지분 재산세 전액 — 주택분 재산세 1/2 — 지방세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 국세

2004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이 자료는 2004년 11월 30일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2004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의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 '04. 10월말까지 지원된 공적자금은 164.8조원임('04. 1~10월중 3.7조원 지원)

○ '04년 10월중 35억원 지원

– 2개 저축은행에 대한 출연 27억원, 현투증권 출연 3억원, 신협에 대한 예금대지급 5억원

□ '04. 10월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68.6조원임('04. 1~10월중 5.7조원 회수)

○ '04년 10월중 2,582억원 회수

– 파산배당 1,523억원, 자산매각 100억원, 대출금 회수 81억원, 부실채권 회수 878억원

⇒2004년 10월말 현재 회수율은 41.6%(전월 대비 0.1%p 증가)

□ '04년도 공적자금상환계획에 따른 정부보증채 만기도래액(원금 기준) 18.8조원 중 '04. 10월말까지 만기도래액 15.6조원 상환

○ 예보는 만기도래분 16.6조원 중 14.0조원 상환

○ KAMCO는 만기도래분 2.2조원 중 1.6조원 상환

※ 2004년 재정분담분 12.0조원 중 예보에 9.4조원 출연

1. 공적자금 지원현황

가. 재원별

('97. 11월~'04. 10월말, 단위 : 조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부실채권매입	계
채권발행	42.2	15.2	20.0	4.2	20.5	102.1
회수자금	6.0	2.2	7.4	5.1	17.4	38.1
공공자금	14.0	–	–	6.3	–	20.3
기타자금주)	0.03	0.2	2.9	0.1	1.1	4.3
계	62.2	17.6	30.3	15.7	39.0	164.8

주) 예보 · 자산관리공사의 기금적립금 등 자체조달 재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임

나. 금융권별

('97. 11월~'04. 10월말, 단위 : 조원)

금 융 권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8	–	14.4	24.6	86.8
제2금융권	종 금	2.7	0.4	18.3	–	1.5	22.9
	증 권 · 투 신	9.6	0.1	0.01	0.3	8.5	18.5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8	–	–	4.8
	저 축 은 행	–	0.2	7.3	0.6	0.2	8.3
	소 계	28.2	3.8	30.3	1.2	12.0	75.6
해외금융기관 등		–	–	–	–	2.4	2.4
계		62.2	17.6	30.3	15.7	39.0	164.8

다. 기관별

('97. 11월~'04. 10월말, 단위 : 조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49.5	17.6	30.3	9.3	–	106.8
자산관리공사	–	–	–	–	39.0	39.0
정 부	11.8	–	–	6.3	–	18.1
한 국 은 행	0.9	–	–	–	–	0.9
계	62.2	17.6	30.3	15.7	39.0	164.8

라. 연도별

('97. 11월~'04. 10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5
2000년		8.9	20.0	0.8	7.4	37.1
2001년		29.2	5.1	△0.2	△7.0	27.1
2002년		–	1.9	–	1.8	3.7
2003년		–	1.6	△0.5	1.0	2.1
2004년	1/4	–	3.5	△0.1	–	3.4
	2/4	–	0.2	–	–	0.2
	3/4	–	0.2	△0.1	–	0.1
	10월	–	0.004	–	–	0.004
	소 계	–	3.9	△0.2	–	3.7
누 계		102.1	38.2	20.2	4.3	164.8

2. 공적자금 회수현황

가. 총괄표

('97. 11월~'04. 10월말, 단위 : 조원)

구 분	회 수 방 법						
예금보험공사	출자금 회수	파산배당 등	자산매각 등	–			소계
	7.9	14.1	5.4	–			27.3
자산관리공사	국제 입찰	ABS 발행	AMC, CRC, CRV 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회수	환매, 해제	소계
	1.6	4.8	1.9	11.4	3.4	10.3	33.4
정 부	출자금 회수	후순위채권 회수		–			소계
	1.3	6.6		–			7.9
계							68.6

나. 연도별

('97. 11월~'04. 10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 부	계
	출자금 회수	파산배당 등	자산매각 등	소 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4	14.0
2000년	1.0	2.9	2.2	6.1	8.9	0.005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2	0.9	0.5	2.6	3.8	6.6	13.0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004년 1/4	0.1	0.9	0.5	1.5	0.4	–	1.9
2004년 2/4	1.2	0.5	0.3	2.0	0.2	0.1	2.3
2004년 3/4	0.3	0.5	0.1	0.9	0.2	0.1	1.2
2004년 10월	–	0.2	–	0.2	0.1	–	0.3
2004년 소 계	1.6	2.1	0.9	4.6	0.9	0.2	5.7
누 계	7.9	14.1	5.4	27.3	33.4	7.9	68.6

※ '04. 8월부터는 종전에 항목별 합계를 맞추기 위해 일부 수치를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계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항목 · 합계란에 관계없이 반올림 원칙을 적용함

3. 2004년중 공적자금 상환현황

('04. 10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출연 및 정부보증채권 원리금 상환		
			계 획	실 적
공적자금 상환기금		○ 출연	142,165	111,186
		– 원금상환	120,000	93,582
		(예보채상환기금)	(120,000)	(93,582)
		(부실채권정리기금)	(–)	(–)
		– 이자상환	22,165	17,603
		(예보채상환기금)	(22,165)	(17,603)
		(부실채권정리기금)	(–)	(–)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 채권 원리금 상환[1]	214,297	177,347
		(2004년 만기채권원금)	(166,216)	(139,809)
		(채권이자)	(48,081)	(37,538)
	부실채권 정리기금	○ 채권 원리금 상환[2]	27,549	19,026
		(2004년 만기채권원금)	(21,587)	(15,644)
		(채권이자)	(5,962)	(3,382)

주: 1) 예보채상환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과 회수자금 등으로 상환
2) 부실채권정리기금(KAMCO)은 자체 회수자금으로 상환

〈참고〉 '04. 10월중 지원 및 회수 세부내역

가. 지원금액 : 35억원

□ **예보 출연 : 30억원**

○ 부실저축은행 인수로 순자산부족분이 발생한 하나로 · 텔슨저축은행에 대해 27억원

○ 현투증권 소송손실 사후지원 3억원

□ **예보 예금대지급: 15개 신협 등에 대한 예금보험금 5억원**

나. 회수금액 : 2,582억원

〈예금보험공사 : 1,704억원〉

□ **파산배당 : 1,523억원**

○ 한아름금고 650억원(저축은행계정 200억원, 종금계정 450억원), 동화은행 370억원, 경인금고 70억원, 미래금고 42억원, 신협 391억원

□ **자산매각 : 100억원**

○ 제일은행 풋백옵션 관련 인수자산 100억원

□ **대출금 회수 : 81억원**

○ 대전금고 76억원, 새누리 저축은행 5억원

〈자산관리공사 : 878억원〉

□ **부실채권 매각**

○ 대우채권변제 288억원, ABS발행 250억원, 채권개별매각 177억원, 법원경매 · 공사공매 40억원, 직접회수 등 123억원

현금영수증제도 시범운영 관련 현황

※ 이 자료는 2004년 11월 26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발표한 「현금영수증제도 시범운영 관련 현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11월 16일부터 시행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11월 23일까지의 현금영수증 발급현황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파악하여 발표함**

□ **11월 23일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업체 수는 172,512개이며, 지난 일주일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총 441,060건으로**

○ 일일 평균 55,000여건이고 최대 80,000여건이 발급되었으며 주로 대형 유통업체나 주유소 등에서 발급된 것으로 파악됨

○ 현금영수증 가맹업체 수는 11월 16일 이후 매일 7,000~8,000개 업체가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어 연말까지 40만개 이상의 가맹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됨

□ **국세청에서는 11월 16일부터 상담원 30여명 규모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를 개통하여 소비자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1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총 상담건수는 3,700여건이며 이 중 ARS이용이 2,100여건, 상담원 연결건이 1,600여건 임

– 주요 상담내용은 제도개요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 관련문의 등임

□ **현금영수증제도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가 확실하게 보상금 추첨대상이 되는 방법은**

○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카드 등을 등록하는 것임

○ 아울러, 시범운영기간 중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한 번만 거치면 내년 본격시행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시범운영기간 중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추첨은 19세 이상은 12월 18일 KBS의 신용카드복권 추첨방송 시에, 18세 이하는 12월 20일 20시에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실시될 예정임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소비자는 일일 결제내역 조회, 월별 결제내역 조회 및 복권번호 조회와 당첨여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 자주 문의되는 사항

1. 현금영수증제도란?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과 함께 카드,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거래 건별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제도

–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

2.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카드는?

● 카드 발급번호가 13~19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마그네틱선에 카드일련번호가 수록되어 있는 카드

– 국내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 직불카드 및 OK캐쉬백카드 등의 적립식 카드가 대부분 해당됨

3. 시범운영 참여자에 대한 혜택은?

●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소비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복권 추첨을 통하여 19세 이상 소비자 14,411명에게 214백만원, 18세 이하 청소년 1,044명에게는 20백만원 등 총 23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 또한, 현금영수증 시범운영에 참여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300명을 추첨하여 18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4.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 가입절차는?

●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회원가입란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사용자ID · 비밀번호 · 이메일주소 등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할 핸드폰번호와 카드번호를 5개까지 등록

● 회원가입이 끝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복권추첨번호조회, 당첨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5.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은?

●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등(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수취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6. 현금영수증 1매마다 모두 추첨기회를 주나?

● 현금영수증을 동일 가맹점에서 1일 5매 이상 교부받은 경우에는 5매까지 추첨대상에 포함하고 그 이상 사용건에 대하여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제한을 두는 사유

• 당첨을 위하여 소액으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영수증을 교부받는 등 당초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함

7. 본인이 당첨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19세 이상 소비자는 12월 18일 신용카드복권 추첨방송 종료후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또는 ARS 1544-2020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 18세 이하 청소년은 12월 20일 20시에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전산추첨 후 당첨여부 조회가 가능

8. 복권 보상금 또는 경품을 지급받는 방법은?

- 19세 이상 소비자는 추첨결과를 확인한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12월 26일까지 등록하면 등록된 계좌로 보상금을 이체
- 18세 이하 청소년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추첨결과를 확인한 후 당첨금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경품을 선택하고 경품을 지급받을 주소 및 재학중인 학교명 또는 최종 졸업한 학교명을 입력하면 각각 경품 배송

재정통계

• 자산재평가세 편

• 부가가치세 Ⅰ편

1.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
2.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3.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
5. 업태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 Ⅱ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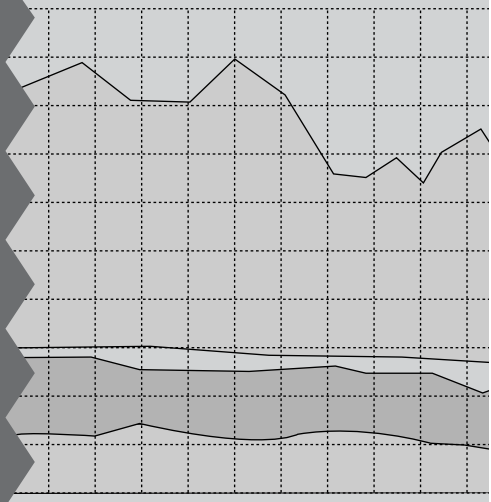

1.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율	
						(B/A)	(C/A)
1977	218,224	247,238	241,573	642	5,023	113.3	110.7
1978	817,115	846,942	838,907	4,709	3,326	103.7	102.7
1979	1,006,946	1,103,417	1,088,675	4,963	9,779	109.6	108.1
1980	1,472,163	1,507,150	1,471,194	9,244	26,712	102.4	99.9
1981	1,890,413	1,899,076	1,804,760	16,106	78,210	100.5	95.5
1982	2,142,931	2,251,111	2,094,383	26,621	130,107	105.0	97.7
1983	2,513,658	2,759,183	2,559,277	37,997	161,909	109.8	101.8
1984	2,737,860	2,945,555	2,704,272	44,571	196,712	107.6	98.8
1985	3,031,074	3,154,923	2,901,197	50,691	203,035	104.1	95.7
1986	3,138,132	3,605,941	3,272,210	65,962	267,769	114.9	104.3
1987	3,579,790	3,949,942	3,650,479	76,742	222,721	110.3	102.0
1988	3,995,152	4,382,836	4,205,215	72,457	105,164	109.7	105.3
1989	4,686,836	5,463,006	5,260,229	71,990	130,787	116.6	112.2
1990	6,714,058	7,187,670	6,964,419	68,159	155,092	107.1	103.7
1991	8,752,203	8,588,360	8,252,627	62,689	273,044	98.1	94.3
1992	10,383,796	10,610,992	10,076,296	101,703	432,993	102.2	97.0
1993	12,003,846	12,287,114	11,687,506	152,562	447,046	102.4	97.4
1994	13,478,700	13,762,576	13,057,973	170,144	534,459	102.1	96.9
1995	14,522,400	15,754,211	14,636,893	365,278	752,040	108.5	100.8
1996	16,606,400	18,225,257	16,789,539	469,481	966,237	109.7	101.1
1997	18,619,200	21,473,127	19,487,991	572,279	1,412,857	115.3	104.7
1998	16,434,200	18,200,874	15,706,805	981,218	1,512,851	110.7	95.6
1999	18,807,706	22,900,346	20,369,037	930,947	1,600,362	121.8	108.3
2000	21,669,500	25,654,731	23,212,042	746,475	1,696,214	118.4	107.1
2001	23,843,400	28,735,093	25,834,726	1,148,842	1,751,525	120.5	108.4
2002	31,967,700	34,989,929	31,608,756	1,391,410	1,989,763	109.5	98.9

주: 1. 징수기준이며 수납액은 수입분을 포함.
2. 납세자 수는 각 연도 2기 확정신고인원이며 1989년 이후는 소액부징수자를 포함한 인원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단위: 명, 억원)

연도	인 원					과 세 표 준				
	계	법 인	일반(개인)	간이(개인)	특례(개인)	계	법 인	개인일반	간 이	과세특례
1983	1,168,672	37,525	252,273	–	878,874	1,434,211	1,122,819	245,963	–	65,429
1984	1,221,161	40,645	281,786	–	898,730	1,548,835	1,193,717	286,950	–	68,168
1985	1,269,342	43,712	310,883	–	914,747	1,649,959	1,270,472	310,788	–	68,699
1986	1,341,398	47,523	345,143	–	948,732	1,896,456	1,462,464	365,506	–	68,486
1987	1,420,082	53,088	388,894	–	978,100	2,270,977	1,765,903	438,102	–	66,972
1988	1,472,424	59,934	410,269	–	1,002,221	2,654,569	2,065,858	518,390	–	70,321
1989	1,654,553	69,511	468,771	–	1,116,271	2,965,561	2,293,451	594,378	–	77,732
1990	1,834,240	81,402	550,780	–	1,202,058	3,632,349	2,806,283	738,178	–	87,888
1991	1,988,821	94,579	626,974	–	1,267,268	4,456,882	3,453,829	905,849	–	97,204
1992	2,102,203	107,073	672,723	–	1,322,407	5,048,362	3,952,451	988,039	–	107,872
1993	2,253,105	117,374	778,854	–	1,356,877	5,778,181	4,522,435	1,135,498	–	120,248
1994	2,388,044	133,911	933,335	–	1,320,798	6,903,037	5,402,193	1,373,072	–	127,772
1995	2,526,198	150,023	1,103,567	–	1,272,608	8,383,692	6,635,042	1,618,249	–	130,401
1996	2,580,113	169,512	926,841	273,197	1,210,563	9,606,041	7,671,075	1,732,211	53,382	149,373
1997	2,930,116	192,333	1,004,852	490,034	1,242,897	10,859,827	8,816,471	1,751,835	132,579	158,942
1998	2,855,369	197,185	979,285	546,161	1,132,738	10,569,437	8,769,673	1,538,111	125,864	135,789
1999	2,998,956	232,474	1,059,109	586,800	1,120,573	11,717,850	9,598,884	1,821,606	158,356	139,004
2000	3,390,772	278,657	1,442,987	1,669,128	–	13,856,522	11,369,768	2,200,326	211,875	74,553
2001	3,709,035	321,204	1,573,217	1,814,614	–	15,153,891	12,433,732	2,454,034	266,125	–
2002	3,963,454	345,292	1,774,268	1,843,894	–	17,255,021	14,159,550	2,824,369	271,102	–

주: 연도별 인원은 소액부징수자를 포함한 각 연도 2기 확정신고인원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단위: 억원, %)

연도	유 형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실 세 수	
		계	국내분	수입분	계	일반환급	조기환급			세 액	점유비
							소 계	수 출	투 자		
1983	계	35,095	19,755	15,340	10,106	914	9,192	8,286	906	24,989	100.0
	법 인	28,434	13,094	15,340	8,807	582	8,225	7,621	604	19,627	78.5
	개인일반	5,395	5,395	–	1,299	332	967	665	302	4,096	16.4
	특례	1,266	1,266	–	–	–	–	–	–	1,266	5.1
1984	계	40,668	22,277	18,391	13,287	983	12,304	11,094	1,210	27,381	100.0
	법 인	32,945	14,554	18,391	11,623	620	11,003	10,245	758	21,322	77.9
	개인일반	6,401	6,401	–	1,664	363	1,301	849	452	4,737	17.3
	특례	1,322	1,322	–	–	–	–	–	–	1,322	4.8
1985	계	43,750	24,340	19,410	14,045	763	13,282	11,762	1,520	29,705	100.0
	법 인	35,517	16,107	19,410	12,318	487	11,831	10,815	1,016	23,199	78.1
	개인일반	6,901	6,901	–	1,727	276	1,451	947	504	5,174	17.4
	특례	1,332	1,332	–	–	–	–	–	–	1,332	4.5
1986	계	50,565	29,339	21,226	18,132	708	17,424	15,528	1,896	32,433	100.0
	법 인	41,013	19,787	21,226	15,922	444	15,478	14,140	1,338	25,091	77.4
	개인일반	8,222	8,222	–	2,210	264	1,946	1,388	558	6,012	18.5
	특례	1,330	1,330	–	–	–	–	–	–	1,330	4.1
1987	계	62,854	33,783	29,071	26,715	699	26,016	23,468	2,548	36,139	100.0
	법 인	51,652	22,581	29,071	23,945	422	23,523	21,750	1,773	27,707	76.7
	개인일반	9,907	9,907	–	2,770	277	2,493	1,718	775	7,137	19.7
	특례	1,295	1,295	–	–	–	–	–	–	1,295	3.6
1988	계	74,002	40,696	33,306	29,422	918	28,504	24,805	3,699	44,580	100.0
	법 인	60,516	27,210	33,306	26,250	589	25,661	23,092	2,569	34,266	76.9
	개인일반	12,121	12,121	–	3,172	329	2,843	1,713	1,130	8,949	20.1
	특례	1,365	1,365	–	–	–	–	–	–	1,365	3.1
1989	계	84,015	48,834	35,181	29,063	1,465	27,598	22,306	5,292	54,952	100.0
	법 인	68,342	33,161	35,181	24,766	965	23,801	20,411	3,390	43,576	79.3
	개인일반	14,185	14,185	–	4,297	500	3,797	1,895	1,902	9,888	18.0
	특례	1,488	1,488	–	–	–	–	–	–	1,488	2.7
1990	계	105,009	61,827	43,182	35,370	1,901	33,469	23,111	10,358	69,639	100.0
	법 인	85,429	42,247	43,182	28,770	1,173	27,597	20,935	6,662	56,659	81.4
	개인일반	18,022	18,022	–	6,600	728	5,872	2,176	3,696	11,422	16.4
	특례	1,558	1,558	–	–	–	–	–	–	1,558	2.2
1991	계	130,034	78,009	52,025	42,320	2,937	39,383	28,108	11,275	87,714	100.0
	법 인	104,878	52,853	52,025	34,267	1,817	32,450	25,778	6,672	70,611	80.5
	개인일반	23,398	23,398	–	8,053	1,120	6,933	2,330	4,603	15,345	17.5
	특례	1,758	1,758	–	–	–	–	–	–	1,758	2.0
1992	계	144,496	90,650	53,846	41,285	3,214	38,071	28,446	9,625	103,211	100.0
	법 인	115,995	62,149	53,846	34,085	2,052	32,033	26,001	6,032	81,910	79.4
	개인일반	26,505	26,505	–	7,200	1,162	6,038	2,445	3,593	19,305	18.7
	특례	1,996	1,996	–	–	–	–	–	–	1,996	1.9

3.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계속)

(단위: 억원, %)

연도	유 형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실 세 수	
		계	국내분	수입분	계	일반환급	조기환급			세 액	점유비
							소 계	수 출	투 자		
1993	계	160,738	102,984	57,754	41,396	4,336	37,060	27,657	9,403	119,342	100.0
	법 인	129,840	72,086	57,754	33,234	2,751	30,483	25,025	5,458	96,606	80.9
	개인일반	28,641	28,641	–	8,162	1,585	6,577	2,632	3,945	20,479	17.2
	특례	2,257	2,257	–	–	–	–	–	–	2,257	1.9
1994	계	187,923	117,816	70,107		4,555	46,324	33,453	12,871	137,044	100.0
	법 인	151,650	81,543	70,107	50,879	2,408	38,287	30,528	7,759	110,955	80.9
	개인일반	34,130	34,130	–	40,695	2,147	8,037	2,925	5,112	23,946	17.5
	특례	2,143	2,143	–	10,184	–	–	–	–	2,143	1.6
1995	계	225,403	136,535	88,868	72,431	6,462	65,969	48,498	17,471	152,972	100.0
	법 인	182,921	94,053	88,868	60,408	4,021	56,387	45,342	11,045	122,513	80.1
	개인일반	41,090	41,090	–	12,023	2,441	9,582	3,156	6,426	29,067	19.0
	특례	1,392	1,392	–	–	–	–	–	–	1,392	0.9
1996	계	259,402	158,360	101,042	83,579	7,601	75,978	54,644	91,664	175,823	100.0
	법 인	211,579	110,537	101,042	70,074	4,828	65,246	50,956	14,290	141,505	80.5
	개인일반	46,152	46,152	–	13,478	2,746	10,732	3,688	7,044	23,674	13.5
	특례	702	702	–	–	–	–	–	–	702	0.4
1997	계	285,212	170,088	115,124	91,373	7,914	83,459	61,277	22,182	193,839	100.0
	법 인	235,123	119,999	115,124	75,998	5,410	70,588	56,853	13,735	159,125	82.1
	개인일반	46,658	46,658	–	15,343	2,472	12,871	4,424	8,447	31,315	16.2
	특례	845	845	–	–	–	–	–	–	845	0.4
1998	계	273,421	164,078	109,343	99,793	6,091	93,702	80,970	12,732	173,628	100.0
	법 인	227,908	118,565	109,343	88,616	4,148	84,468	75,626	8,842	139,292	80.2
	개인일반	42,012	42,012	–	11,166	1,932	9,234	5,344	3,890	30,846	17.8
	특례	601	601	–	–	–	–	–	–	601	0.3
1999	계	316,566	196,295	120,271	106,559	5,681	100,878	79,386	21,492	210,007	100.0
	법 인	262,595	142,324	120,271	94,745	3,495	91,250	73,930	17,320	167,850	79.9
	개인일반	50,233	50,233	–	11,791	2,163	9,628	5,456	4,172	38,442	18.3
	특례	482	482	–	10	10	–	–	–	472	0.2
2000	계	386,777	229,141	157,636	141,890	7,022	134,868	107,038	27,830	244,887	100.0
	법 인	320,426	162,790	157,636	127,029	4,258	122,771	101,106	21,665	193,397	79.0
	개인일반	63,002	63,002	–	14,732	2,635	12,097	5,932	6,165	48,270	19.7
	특례	247	247	–	21	21	–	–	–	226	0.1
2001	계	417,174	255,754	161,420	137,798	8,390	129,408	103,211	26,197	279,376	100.0
	법 인	347,894	186,474	161,420	119,445	4,957	114,488	97,362	17,126	228,449	81.8
	개인일반	68,498	68,498	–	18,331	3,411	14,920	5,849	9,071	50,167	18.0
	특례	782	782	–	22	22	–	–	–	760	0.3
2002	계	469,185	299,042	170,143	146,082	15,166	130,916	104,051	26,865	323,103	100.0
	법 인	386,239	216,096	170,143	118,712	7,545	111,167	98,659	12,508	267,527	82.8
	개인일반	81,952	81,952	–	27,354	7,605	19,749	5,392	14,357	54,598	16.9
	특례	994	994	–	16	16	–	–	–	978	0.3

주: 1. 조기환급: 신고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2. 납부, 환급, 실세수액은 신고기준임.
3. 수입분은 법인의 납부세액에 가산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

(단위: 명, 백만원)

기간	유형	경정인원			적출과표			추징세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83. 1	계	102,431	83,821	18,610	772,437	332,228	440,209	77,412	28,166	49,246
	법인	7,827	4,140	2,687	291,683	80,338	211,345	31,654	8,806	22,848
	개인일반	56,790	42,762	14,028	370,023	148,450	221,573	43,445	17,220	26,225
	특례	37,814	36,919	895	110,731	103,440	7,291	2,313	2,140	173
83. 2	계	94,562	70,829	23,733	999,805	222,516	777,289	98,398	18,878	79,520
	법인	9,231	3,465	5,766	546,909	55,736	491,173	54,833	6,493	48,340
	개인일반	54,635	36,601	17,034	368,936	94,156	274,780	41,702	10,790	30,912
	특례	30,696	29,763	933	83,960	72,624	11,336	1,863	1,595	268
84. 1	계	101,847	87,642	14,205	788,404	328,642	459,762	78,191	29,316	48,875
	법인	6,197	3,327	2,870	357,918	104,959	252,959	37,725	11,968	25,757
	개인일반	55,791	44,783	11,008	336,769	136,863	199,906	38,391	15,431	22,960
	특례	39,859	39,532	327	93,717	86,820	6,897	2,075	1,917	158
84. 2	계	72,181	66,774	5,407	487,163	302,752	184,411	53,834	35,542	18,292
	법인	5,089	4,243	846	205,715	69,224	136,491	26,692	14,234	12,458
	개인일반	39,128	34,621	4,507	218,167	172,214	45,953	25,696	19,913	5,783
	특례	27,964	27,910	54	63,281	61,314	1,967	1,446	1,395	51
85. 1	계	69,747	64,390	5,357	500,346	323,432	176,914	51,394	31,735	19,659
	법인	5,009	3,685	1,324	193,124	87,922	105,202	21,923	10,655	11,268
	개인일반	42,258	38,338	3,920	234,971	166,078	68,893	27,995	19,662	8,333
	특례	22,480	22,367	113	72,251	69,432	2,819	1,486	1,418	68
85. 2	계	58,361	51,131	7,230	547,804	331,324	216,480	58,478	33,783	24,695
	법인	6,065	4,556	1,509	235,055	115,999	119,056	27,165	13,740	13,425
	개인일반	36,804	31,135	5,669	257,456	162,866	94,590	30,259	19,061	11,198
	특례	15,492	15,440	52	55,293	52,459	2,834	1,054	982	72
86. 1	계	355,444	349,496	5,948	680,189	442,923	237,266	148,414	120,675	27,739
	법인	10,563	9,172	1,391	184,941	62,160	122,781	39,796	24,940	14,856
	개인일반	147,056	142,932	4,124	417,403	308,396	109,007	99,689	86,930	12,759
	특례	197,825	197,392	433	77,845	72,367	5,478	8,929	8,805	124
86. 2	계	328,615	322,628	5,987	640,845	325,482	315,363	142,198	107,472	34,726
	법인	10,322	9,117	1,205	248,042	83,839	164,203	42,774	24,492	18,282
	개인일반	123,907	119,479	4,428	334,718	190,312	144,406	91,790	75,520	16,270
	특례	194,392	194,038	354	58,085	51,331	6,754	7,634	7,460	174
87. 1	계	364,655	358,753	5,902	963,794	599,339	364,455	189,777	149,806	39,971
	법인	11,883	10,611	1,272	305,116	116,687	188,429	55,658	34,755	20,903
	개인일반	163,402	159,062	4,340	526,980	361,786	165,194	124,660	105,922	18,738
	특례	189,370	189,080	290	131,698	120,866	10,832	9,459	9,129	330
87. 2	계	342,039	340,185	1,854	495,869	312,882	182,987	155,610	135,259	20,351
	법인	11,040	10,620	420	130,749	23,224	107,525	46,899	34,648	12,251
	개인일반	140,258	138,911	1,347	311,516	238,532	72,984	101,360	93,320	8,040
	특례	190,741	190,654	87	53,604	51,126	2,478	7,351	7,291	60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계속)

(단위: 명, 백만원)

기간	유 형	경 정 인 원			적 출 과 표			추 징 세 액		
		계	당 연	선 별	계	당 연	선 별	계	당 연	선 별
88. 1	계	377,595	375,249	2,346	888,569	657,499	231,070	204,526	175,505	29,021
	법인	10,391	9,694	697	342,854	182,650	160,204	63,311	44,365	18,946
	개인일반	158,376	156,734	1,642	471,167	401,215	69,952	132,599	122,545	10,054
	특례	208,828	208,821	7	74,548	73,634	914	8,616	8,595	21
88. 2	계	371,702	368,361	3,341	811,028	499,438	311,590	199,799	166,016	33,783
	법인	11,138	10,307	831	265,609	130,279	135,330	60,688	42,233	18,455
	개인일반	143,931	141,740	2,191	478,303	311,572	166,731	129,945	114,828	15,117
	특례	216,633	216,314	319	67,116	57,587	9,529	9,166	8,955	211
89. 1	계	426,843	423,712	3,131	1,081,729	696,211	385,518	237,405	203,882	33,523
	법인	13,271	12,586	685	440,826	255,781	185,045	75,007	56,142	18,865
	개인일반	178,319	176,347	1,972	533,298	343,179	190,119	152,384	137,964	14,420
	특례	235,253	234,779	474	97,605	87,251	10,354	10,014	9,776	238
89. 2	계	439,287	436,366	2,921	918,215	462,157	456,058	213,241	175,024	38,217
	법인	11,997	11,347	650	326,022	115,458	210,564	56,195	36,962	19,233
	개인일반	157,304	155,586	1,718	521,368	292,963	228,405	146,696	128,159	18,537
	특례	269,986	269,433	553	70,825	53,736	17,089	10,350	9,903	447
90. 1	계	453,308	451,139	2,169	1,060,990	620,977	440,013	265,000	227,723	37,277
	법인	12,955	12,497	458	389,245	185,911	203,334	71,503	55,154	16,349
	개인일반	166,020	164,862	1,158	574,055	357,798	216,257	181,141	160,691	20,450
	특례	274,383	273,830	553	97,690	77,268	20,422	12,356	11,878	478
90. 2	계	345,362	342,954	2,408	1,007,145	591,098	416,047	257,259	221,204	36,055
	법인	11,988	11,506	482	327,525	160,055	167,470	68,846	52,795	16,051
	개인일반	146,672	145,521	1,151	562,447	339,454	222,993	176,442	157,005	19,437
	특례	187,152	186,377	775	117,173	91,589	25,584	11,971	11,404	567
91. 1	계	387,190	384,878	2,312	1,079,471	610,015	469,456	247,020	208,066	38,954
	법인	11,199	10,893	306	340,418	164,878	175,540	85,973	69,283	16,690
	개인일반	151,165	150,202	963	551,564	322,273	229,291	196,310	175,385	20,925
	특례	224,826	223,783	1,043	187,489	122,864	64,625	14,737	13,398	1,339
91. 2	계	425,659	421,915	3,744	1,289,410	709,087	580,323	364,213	311,261	52,952
	법인	14,232	13,522	710	474,226	213,871	260,355	122,690	98,367	24,323
	개인일반	158,865	156,867	1,998	659,383	389,545	269,838	227,244	199,736	27,508
	특례	252,562	251,526	1,036	155,801	105,671	50,130	14,279	13,158	1,121
92. 1	계	473,355	470,136	3,219	1,574,512	1,032,727	541,785	497,406	447,623	49,783
	법인	15,943	15,441	502	505,964	277,711	228,253	179,633	157,203	22,430
	개인일반	182,774	181,245	1,529	796,707	545,834	250,873	299,273	273,697	25,576
	특례	274,638	273,450	1,188	271,841	209,182	62,659	18,500	16,723	1,777
92. 2	계	544,072	540,035	4,037	2,306,783	1,496,645	810,138	545,169	491,072	
	법인	17,203	16,549	654	1,176,570	729,026	447,544	202,939	178,938	54,097
	개인일반	174,115	171,852	2,263	812,535	506,604	305,931	318,936	290,090	24,001
	특례	352,754	351,634	1,120	317,678	261,015	56,663	23,294	22,044	28,846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계속)

(단위: 명, 백만원)

기간	유형	경정인원			적출과표			추징세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93. 1	계	599,783	593,258	6,525	3,459,653	2,430,766	1,028,887	616,781	535,806	80,975
	법인	19,464	18,781	683	1,657,542	1,090,500	567,042	248,932	202,461	46,471
	개인일반	208,527	206,074	2,453	1,190,586	852,074	338,512	339,742	307,976	31,766
	특례	371,792	368,403	3,389	672,525	549,192	123,333	28,152	25,369	2,783
93. 2	계	631,059	621,160	9,899	3,175,528	1,702,686	1,472,842	668,393	524,760	143,633
	법인	22,508	20,864	1,644	1,168,813	445,654	723,159	266,743	194,914	71,829
	개인일반	229,578	223,861	5,717	1,466,240	813,869	652,371	374,659	305,042	69,617
	특례	378,973	376,435	2,538	540,975	443,663	97,312	26,991	24,804	2,187
94. 1	계	510,215	502,837	7,387	2,894,434	1,364,202	1,530,232	636,701	487,061	149,640
	법인	21,750	20,179	1,571	1,290,673	454,443	836,230	272,924	193,351	79,573
	개인일반	186,793	181,580	5,213	1,206,547	553,285	653,262	339,104	269,937	69,167
	특례	301,672	301,078	594	397,214	356,474	40,740	24,673	23,773	900
94. 2	계	525,952	518,594	7,358	3,171,147	1,408,485	1,762,662	669,335	512,942	156,393
	법인	24,071	22,563	1,508	1,359,441	424,410	935,031	277,332	203,442	73,890
	개인일반	211,736	206,148	5,588	1,351,112	538,097	813,015	362,816	280,650	82,166
	특례	290,145	289,883	262	460,594	445,978	14,616	29,187	28,850	337
95. 1	계	485,897	481,642	4,255	3,981,436	2,520,895	1,460,541	899,521	774,865	124,656
	법인	25,565	24,613	952	1,285,817	585,954	699,863	352,723	299,048	53,675
	개인일반	223,193	220,166	3,027	1,950,332	1,229,235	721,097	513,424	443,318	70,106
	특례	237,139	236,863	276	745,287	705,706	39,581	33,374	32,499	875
95. 2	계	518,052	513,438	4,614	3,970,448	2,351,898	1,618,550	956,055	821,763	134,292
	법인	32,107	31,166	941	1,552,000	693,584	858,416	406,336	341,124	65,212
	개인일반	313,813	310,507	3,306	1,677,056	952,437	724,619	525,852	457,591	68,261
	특례	172,132	171,765	367	741,392	705,877	35,515	23,867	23,048	819
96. 1	계	403,217	400,903	2,314	4,308,982	3,175,374	1,133,608	1,113,737	1,021,984	91,753
	법인	35,613	349000	713	1,671,172	1,005,235	665,937	476,222	425,964	50,258
	개인일반	307,605	306,140	1,465	1,783,124	1,328,540	454,584	605,605	564,392	41,213
	특례	59,999	59,863	136	854,686	841,599	13,087	31,910	31,628	282
96. 2	계	408,991	402,621	6,370	4,689,364	2,728,080	1,961,284	1,007,490	856,396	151,094
	법인	33,638	31,111	2,527	1,630,461	568,394	1,062,067	429,638	348,907	80,731
	개인일반	296,274	292,861	3,453	2,401,873	1,541,192	860,681	557,108	487,603	69,505
	특례	79,079	78,649	430	657,030	618,640	38,390	20,744	19,886	858
97. 1	계	555,760	550,997	4,763	5,282,885	3,175,069	2,107,816	1,333,836	1,165,848	167,988
	법인	46,344	44,825	1,519	2,284,078	996,910	1,287,168	622,989	522,976	100,013
	개인일반	336,033	333,324	2,709	2,135,124	1,335,149	779,975	659,148	592,583	66,565
	간이과세	65,203	64,957	246	160,835	145,632	15,203	25,115	24,330	785
	특례	108,180	107,891	289	702,848	677,378	25,470	26,584	25,959	625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계속)

(단위: 명, 백만원)

기간	유 형	경 정 인 원			적 출 과 표			추 징 세 액		
		계	당 연	선 별	계	당 연	선 별	계	당 연	선 별
97. 2	계	542,581	537,361	5,220	4,842,795	2,992,114	1,850,681	1,325,783	1,169,428	156,355
	법인	54,693	51,598	3,095	2,162,879	953,099	1,209,780	705,825	600,139	105,686
	개인일반	297,596	295,870	1,726	1,721,886	1,110,197	611,689	577,071	527,329	49,742
	간이과세	103,683	103,478	205	185,263	169,090	16,173	21,866	21,208	658
	특례	86,609	86,415	194	772,767	759,728	13,039	21,021	20,752	858,269
98. 1	계	588,300	584,683	3,617	7,483,393	4,955,473	2,527,920	1,981,053	1,802,030	179,023
	법인	65,848	64,438	1,410	4,223,362	2,580,025	1,643,337	1,134,902	1,013,780	121,122
	개인일반	338,150	336,369	1,781	2,349,324	1,515,064	834,260	797,734	741,980	55,754
	간이과세	120,133	119,819	314	386,280	347,406	38,874	31,780	29,878	1,902
	특례	64,169	64,057	112	524,427	512,978	11,449	16,637	16,392	245
98. 2	계	630,897	625,724	5,173	9,283,957	5,638,407	3,645,550	1,879,272	1,631,927	247,345
	법인	70,817	67,816	3,001	4,838,428	2,042,772	2,795,656	1,029,698	840,244	189,454
	개인일반	327,003	325,168	1,835	2,772,269	1,960,404	811,865	778,269	722,068	56,201
	간이과세	165,910	165,665	245	854,390	824,342	30,048	52,967	51,460	1,507
	특례	67,167	67,075	92	818,870	810,889	7,981	18,338	18,155	183
99. 1	계	678,814	673,758	5,056	11,318,537	9,240,185	2,078,352	1,222,137	956,421	256,716
	법인	84,281	82,338	1,943	4,394,565	3,082,089	1,312,476	380,255	203,068	177,187
	개인일반	336,485	334,188	2,297	5,365,701	4,665,434	700,267	774,288	697,156	77,132
	간이과세	164,810	164,401	409	868,395	822,156	46,239	51,048	49,081	1,967
	특례	93,238	92,831	407	689,876	670,506	19,370	16,546	16,116	430
99. 2	계	694,705	690,565	4,140	10,088,283	8,155,546	1,932,737	842,256	630,182	212,083
	법인	86,258	84,103	2,155	6,751,731	5,274,926	1,476,805	182,228	21,137	161,091
	개인일반	315,134	313,644	1,490	1,770,072	1,352,054	418,018	596,421	547,012	49,409
	간이과세	175,328	175,045	283	870,780	844,635	26,145	48,000	46,743	1,257
	특례	117,985	117,773	212	695,700	683,931	11,769	15,616	15,290	326
00. 1	계	791,168	788,723	2,445	5,588,212	2,220,414	3,367,798	930,126	777,393	152,733
	법인	99,168	98,050	1,118	1,578,769	−1,042,317	2,621,086	273,091	166,549	106,542
	개인일반	341,173	340,144	1,029	2,320,181	1,606,956	713,225	589,485	544,667	44,818
	간이과세	215,642	215,486	156	1,033,984	1,009,652	24,332	54,616	53,419	1,197
	과세특례	135,185	135,043	142	655,278	646,123	9,155	12,934	12,758	176
00. 2	계	724,044	720,872	3,172	8,383,608	5,476,859	2,906,749	705,991	552,148	153,843
	법인	82,715	80,991	1,724	3,803,811	1,466,420	2,337,391	85,419	−22,696	108,115
	개인일반	342,793	341,554	1,239	2,946,410	2,416,932	529,478	565,033	521,350	43,683
	간이과세	188,301	188,129	172	1,084,023	1,047,718	36,305	45,763	43,798	1,965
	과세특례	110,235	110,198	37	549,364	545,789	3,575	9,776	9,696	80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계속)

(단위: 명, 백만원)

기간	유형	경정인원			적출과표			추징세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01. 1	계	754,623	751,227	3,396	8,948,161	3,443,375	5,504,786	1,679,999	1,436,840	243,159
	법인	127,533	125,771	1,762	5,038,981	621,141	4,417,840	856,135	676,032	180,103
	개인일반	456,703	455,300	1,403	2,802,330	1,747,915	1,054,415	798,801	737,269	61,532
	간이과세	154,351	154,171	180	938,418	911,330	27,088	21,613	20,273	1,340
	과세특례	16,036	15,985	51	168,432	162,989	5,443	3,450	3,266	184
01. 2	계	746,220	739,894	6,326	16,234,765	10,354,759	5,880,006	1,688,740	1,255,489	433,251
	법인	131,928	129,382	2,546	10,776,915	6,242,342	4,534,573	939,523	612,751	326,772
	개인일반	461,039	458,010	3,029	4,395,298	3,115,802	1,279,496	724,170	620,588	103,582
	간이과세	145,083	144,487	596	954,740	898,401	56,339	22,880	20,281	2,599
	과세특례	8,170	8,015	155	107,812	98,214	9,598	2,167	1,869	298
02. 1	계	720,344	715,572	4,772	11,545,020	4,678,465	6,866,555	2,135,259	1,765,379	369,880
	법인	147,136	144,964	2,172	6,319,389	1,043,245	5,276,144	1,265,499	982,282	283,217
	개인일반	431,269	429,014	2,255	4,341,942	2,780,413	1,561,529	850,886	765,488	85,398
	간이과세	137,620	137,344	276	836,960	811,390	25,570	17,732	16,566	1,166
	과세특례	4,319	4,250	69	46,729	43,417	3,312	1,142	1,043	99
02. 2	계	717,405	712,142	5,263	11,562,401	4,618,774	6,943,627	2,016,746	1,674,819	341,927
	법인	156,616	154,091	2,525	7,513,134	1,944,293	5,568,841	1,248,690	996,245	252,445
	개인일반	440,151	437,891	2,260	3,531,197	2,186,586	1,344,611	752,150	663,963	88,187
	간이과세	117,769	117,391	378	490,086	464,074	26,012	15,216	14,060	1,156
	과세특례	2,869	2,769	100	27,984	23,821	4,163	690	551	139

주: 특례(과세특례)인원에는 소액부징수자가 제외되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5. 업태별 부가가치율

(단위: %)

과세 기간	계	농, 수, 임, 어업	광 업	제 조	전기, 가스, 수도	도 매	소 매	부동산 매매	건 설	음 식	숙 박	운수, 창고, 통신	부동산 임대	대인, 중개, 주선, 위탁, 도급	기 타
1983. 1(기)	29.7	74.7	36.1	28.0	15.3	11.6	10.6	–	76.7	58.8	51.8	61.3	36.8	50.2	49.7
1983. 2	30.0	67.4	35.0	26.7	20.3	11.5	7.9	–	69.3	56.3	47.4	62.6	7.7	54.4	48.7
1984. 1	27.8	56.9	19.4	19.8	32.5	22.3	13.2	–	65.9	57.7	53.5	63.2	30.3	52.8	50.7
1984. 2	29.1	69.0	37.6	20.4	32.0	25.0	13.4	–	64.9	56.4	49.7	59.7	8.6	55.0	45.9
1985. 1	27.3	62.1	14.7	19.2	40.3	21.3	16.1	–	66.3	54.7	55.7	64.7	42.0	50.5	50.3
1985. 2	29.3	56.8	43.8	22.6	36.1	22.7	14.5	42.4	61.8	54.2	37.2	60.1	31.1	50.1	47.7
1986. 1	27.0	55.3	43.1	21.8	48.5	20.6	16.9	44.8	54.4	54.2	44.1	60.9	40.9	49.3	50.1
1986. 2	28.4	50.2	45.7	22.5	51.1	22.4	15.5	5.9	57.9	52.5	21.4	59.7	22.3	53.8	45.8
1987. 1	25.2	55.0	43.2	19.6	54.6	20.8	16.6	24.9	47.2	52.8	36.2	63.9	47.0	55.7	49.4
1987. 2	24.4	44.8	42.7	17.3	49.3	21.9	15.7	21.9	51.6	48.5	16.4	63.6	26.3	50.4	44.4
1988. 1	23.2	51.4	40.4	18.1	51.4	20.2	15.8	30.2	38.7	49.6	6.7	64.3	39.6	56.6	41.1
1988. 2	25.8	35.6	41.2	21.4	51.4	20.4	14.5	31.4	47.9	49.1	22.1	62.8	25.7	50.9	44.8
1989. 1	23.7	51.1	36.2	18.6	54.0	20.8	15.8	35.7	36.0	49.7	46.3	62.4	42.5	48.0	46.4
1989. 2	24.8	33.1	37.8	19.8	39.0	22.1	14.5	22.2	42.9	48.6	44.6	61.0	23.0	44.6	43.1
1990. 1	22.8	43.1	32.7	18.5	44.7	21.2	15.1	7.2	30.1	49.1	45.3	59.4	28.6	49.2	39.7
1990. 2	23.4	21.6	26.7	18.9	28.8	21.7	13.7	–	41.9	50.0	44.3	56.5	11.8	44.2	38.0
1991. 1	21.3	38.0	31.1	16.7	31.6	20.6	13.6	–	27.8	41.0	52.8	61.7	18.4	45.5	37.2
1991. 2	24.0	42.8	28.5	20.4	20.6	19.3	13.4	–	39.6	49.1	52.9	59.0	7.2	42.3	36.6
1992. 1	23.5	48.9	12.9	20.9	16.0	20.1	12.5	–	32.3	49.2	60.6	60.8	23.2	46.5	35.3
1992. 2	25.8	50.0	30.6	22.4	10.8	20.2	6.8	–	41.6	48.6	53.0	58.6	18.9	25.5	39.1
1993. 1	24.9	23.2	9.3	20.9	18.8	19.5	14.3	–	32.7	47.6	54.1	60.3	31.7	36.1	40.1
1993. 2	26.4	58.4	3.2	23.4	26.6	19.9	15.3	–	42.3	50.2	50.8	62.8	12.0	41.9	43.5
1994. 1	24.3	28.1	11.2	21.7	30.4	19.7	16.2	13.1	30.4	54.8	59.0	60.0	25.2	49.0	42.3
1994. 2	25.1	44.9	18.7	23.2	16.3	19.8	13.3	–	39.8	52.3	49.9	45.5	19.1	48.6	34.7
1995. 1	22.6	25.8	19.3	19.0	21.6	19.2	13.5	–	32.7	54.3	49.4	59.3	29.5	47.7	39.1
1995. 2	21.0	33.9	19.3	14.5	7.3	19.9	12.6	–	37.9	52.9	49.8	60.5	25.8	40.8	36.3
1996. 1	22.4	55.1	15.4	19.4	14.7	18.7	13.9	–	31.2	54.6	47.6	59.1	33.5	39.5	36.5
1996. 2	22.2	39.6	22.0	19.0	2.6	18.1	11.0	–	36.7	47.4	38.0	54.2	22.4	37.7	34.3
1997. 1	22.0	39.8	4.4	20.4	–	18.3	14.2	–	32.5	45.7	35.6	58.7	24.8	36.0	38.1
1997. 2	24.9	50.3	19.7	23.9	0.3	18.0	12.0	–	36.6	46.1	33.7	58.0	15.8	38.3	37.7
1998. 1	28.5	59.0	–	29.6	14.6	16.2	17.8	–	39.4	37.4	54.0	62.7	36.9	45.3	32.6
1998. 2	28.2	42.0	35.8	28.3	13.1	20.2	18.1	–	37.7	49.7	52.6	60.5	40.7	45.7	30.7
1999. 1	23.2	33.2	–	25.5	19.8	7.5	17.9	–	34.6	49.3	60.7	54.4	–	41.5	44.4
1999. 2	26.9	29.7	25.5	24.0	–	21.1	14.0	18.0	42.1	48.6	56.4	57.0	31.8	48.4	39.8
2000. 1	22.7	22.9	–	18.4	29.3	19.0	19.3	9.6	30.7	51.0	55.9	51.1	44.9	50.8	30.4
2000. 2	25.2	32.1	10.0	21.9	15.3	18.5	19.9	–	37.2	54.2	46.8	50.3	38.3	49.3	35.9
2001. 1	23.0	29.6	13.5	20.0	17.7	17.6	20.0	–	32.1	54.3	37.6	55.5	40.1	50.8	32.8
2001. 2	23.9	21.7	19.1	20.6	10.5	16.1	17.8	–	36.8	52.6	37.0	46.5	21.0	47.7	35.6
2002. 1	24.6	28.4	6.0	20.8	20.4	19.4	20.1	–	32.3	53.7	35.1	53.1	14.6	48.0	34.6
2002. 2	18.9	31.0	–	20.3	17.0	16.0	16.2	–	11.0	44.6	–	43.0	–	43.1	34.9

주: 법인 및 개인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연기금 함부로 써선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알려진 '경기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형 뉴딜정책에 관한 논의는 간헐적으로 있어 왔지만 이번 발표는 그동안 검토돼 온 내용을 총망라한 결정판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는 지역균형발전, 기업형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사회기반시설 투자확대 등 그동안 이곳 저곳에서 운위되던 경제활성화 조치에 더해, 장학금 확충과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물론 개별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지만) 다소 번지수가 모호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계획의 핵심은 내년에 경제성장률 5% 달성이 힘드니 총력을 다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재원이다. 이번 계획이 과거 경기활성화 방안과 메뉴는 동일하면서도 맛이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연기금을 동원하겠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연기금이 계속 쌓여 정부저축은 늘어 가는데 경제 전체적으로는 투자가 부족하고 국민들은 연기금에 돈을 내느라 소비할 겨를이 없다. 그래서 연기금 돈은 똑같이 걷되, 정부가 연기금을 독려하여 이들이 직접 유치원도 짓고, 수영장도 짓고, 기숙사도 짓고, 공공청사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혹시 이 때문에 연기금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다 보상해 줄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선 현재 축적되고 있는 연기금 자산은 미래에 지급이 약속된 부채이다. 지급의 규모가 너무 커서 잔고가 확률 1로 바닥이 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돈은 절대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둘째, 연기금이 채권에 주로 투자되고 있는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말도 잘못됐다. 정부가 정말로 사회간접자본이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기로 작정했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재원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이 경우 국채의 소화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 때 연기금이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그 돈으로 투자하면 된다.

셋째, 예상손실을 정부재정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도 잘못됐다. 연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염려되는 이유는 연기금이 잘못되면 재정에서 보전해 주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손실을 재정에서 보전해 줄 경우 연기금의 건전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궁극적인 우려사항인 국민세금 지출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넷째, 모든 민자유치 사업이 그렇듯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줄 때는 실제 공사비용뿐 아니라 적정이윤까지 보장해 주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재정의 부담

은 정부가 직접투자사업을 시행한 경우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투자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사비용만을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예상손실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발상은 연기금의 의사결정 구조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다른 자리에서 주장한 대로 연기금의 의사결정구조가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라면 이런 발상 자체가 쉽게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5%를 하회한다는 점에서 내년은 불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불황시에 일시적으로 적자재정을 통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경기를 부양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정공법을 따라야 한다. 혹시나 이번 발표가 재정적자 규모를 감추어 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2004년 11월 11일자 한국일보 칼럼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 보완해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고액의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통합, 기준시가 적용, 보유세율 인하 및 체계의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본 방향은 보유세 강화로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통한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백번 옳다.

그러나 개편안은 또다른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허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종부세의 경우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합산과세하지 않고 별도과세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준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8억원짜리 집과 5억원짜리 나대지를 보유한 사람은 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가구별 보유부동산이 아니라 개인별 보유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것도 문제다. 고가의 많은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분산시켜 놓았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부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안 돼 재산세만 부과되는 주택의 경우 시·군·구에서 개인별로 합산과세하지 않고 물건별로 과세하는 것도 문제다. 비싼 집을 1채 가진 사람이 여러 채의 싼 집을 보유한 사람보다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현행 6~9단계의 세율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는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 비싼 집의 세부담이 싼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조세저항을 부를 우려도 있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추가 인하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등록세 1%포인트 인하만으로는 미흡하다. 양도소득세 인하나 감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깊이 논의되고 보완되길 바란다.

2004년 11월 12일자 경향신문 사설

종합부동산세 이 정도는 부담하자

세율을 1~3%로 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정부안이 확정됐다.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이나 일정액 이상의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몇십만원 이상 새로운 세금을 뜬금없이 내게 됐다. 집을 팔아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소유하는 죄로만 수십만, 수백만원을 새로 내라고 하니 조세저항을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부의 양극화서 비롯된 사회적 긴장의 완화나 건강하지 않은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이런 정도의 부담은, 가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올 7월 기

준으로 아파트 250만가구가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이라고 한다. 1억원에서 5억원 미만도 270만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만가구 미만이다. 기준시가가 낮기 마련인 다세대와 일반주택을 포함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품게 될 절망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지난 대선때 야당후보의 큰 패착 중의 하나가 여당후보의 수도이전 공약에 맞서 "서울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대다수 국민의 거주형편과 집값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을 것이다. 집값에 얽힌 불평등과 감정은 폭발성이 강한 사회적 과제다. 종합부동산세가 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유세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율을 낮추거나, 기준액을 올리는 시도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보다는 유독 종합부동산세에만 가구가 아닌 사람으로 과세하는 이상한 기준을 바로잡아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준부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가진 사람들을 더 편케 할 것이란 믿음을 가졌으면 한다.

2004년 11월12일자 서울신문 사설

연기금 주식투자, 독립성이 관건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에 연기금 총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4일(한국시간 15일) 아르헨티나 순방 중 "국민이 KT·포스코·국민은행 같이 심리적으로 국민기업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자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외국 투기자본의 M&A에 대비,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연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주문이다.

우리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지분율이 전체 상장주식의 43.7%에 이르면서 핵심 기업들이 M&A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항마'로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자산운용사(투신사)의 몰락 이후 외국자본, 특히 투기성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토종자본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가 연기금에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거부하면서 외국자본이 국내 증시에서 지분율을 무기로 고액의 배당을 챙긴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연기금이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 전문적으로 운용된다는 확신부터 심어주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증시 떠받치기에 연기금 6,000억원을 동원해 1,248억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례로 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연기금 운용방식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2004년 11월 17일자 서울신문 사설

'뉴딜투자펀드'에 대한 기대

정부와 여당이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재원조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투자펀드는 시중 부동자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는 당초 중요 재원으로 생각했던 연기금 활용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적 반대로 여의치 않게 된 데 따라 부각된 대안이지만 보다 시장친화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뉴딜투자펀드'가 성공하

기 위해서는 몇가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따른다. 첫째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과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 환금성이 자유로워야 한다. 투자대상이 공공사업이라는 점은 일단 안전성에 대한 최저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현재의 초저금리 투자환경을 생각할 때 수익성 보장 역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 이 펀드를 증시에 상장, 개인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 방침이기 때문에 환금성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선박펀드와 부동산간접투자펀드(리츠)는 인기 있는 투자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선박펀드는 선박을 매입한 뒤 해운사에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투자펀드'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연기금이나 정부 임차(BTL)방식의 재원조달보다 훨씬 시장친화적이며 따라서 투자의 파급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문제는 정부가 뉴딜식 종합투자계획의 투자 대상이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이외에 학교, 노인의료, 공공청사, 임대주택 등이라는 점에 있다.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강한 이들 사업은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기 힘든 결점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뉴딜투자펀드의 투자 대상은 '돈이 될 만한 사업'으로서는 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사업개발에서 수익관리까지 펀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우수한 전문가를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도 문제로 등장한다.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자금을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중점을 둔 사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펀드인 만큼 세제를 비롯한 특단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결국 이 펀드의 성패 역시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 여부에 달려 있는 셈이다.

2004년 11월 22일자 파이낸셜뉴스 사설

재정포럼

2004년 12월호 통권 제102호

■발 행 처/ 한국조세연구원
■발 행 인/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 집 위 원/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편 집 간 사/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원)
박승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편집·제작/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인 쇄/ 고려문화사 2277-1509

■월간 재정포럼 / 2004년 12월 15일 발행 / 제9권 제12호(통권 제102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7859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TEL : (02)2186-2133 FAX : (02)2186-2139
E-mail : pub@kipf.re.kr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구 한빛은행) 가락중앙지점
·계좌번호 : 441-05-000011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